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발간에 부쳐

최근 우리 언론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으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도로 인한 피해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그 구제방법에 있어서도 종래의 절차에 더해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4년 4월부터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을 두고 언론 보도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해인 2004년도에는 1,816건을 처리하였지만,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8년도에는 11월말 현재 2,3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담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을 들 수 있겠지만 언론매체가 다양해진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건수의 증가와 함께 상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정신청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2004년도의 경우 27.2%에서 2008년도의 경우 11월말 현재 4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법률상담서비스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5년간의 축적된 상담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기업 홍보 관계자, 중고교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그 횟수가 100건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피해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신청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론피해구제 및 분쟁예방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상담사례집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해결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위원회 조정사례를 분석하였고,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보도로 침해받을 수 있는 인격권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한 언론문화는 국민과 언론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국민과 언론을 소통시키는 가교 역할을 다하고, 또한 이번 상담
사례집이 그 가교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제 1 편 정정보도청구 사건

제 1 장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의 개념 2

-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의미와 정정보도 2
-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차이점 5
- 정정보도문에 사과문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6

제 2 장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10

제 1 절 정정보도청구의 주체 10

1. 정정보도청구권자 10

- ‘법인이 아닌 단체’도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0
-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학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4

2. 개별적 연관성 :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16

- 고인(故人)에 대한 보도에 대해 유족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6
- 교원 전체에 대한 보도에 대해 교사 개인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9

제 2 절 정정보도청구의 객체 22

- ‘광고(廣告)’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2
- ‘시론(時論)’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3
- ‘만평(漫評)’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5
- ‘전재기사(轉載記事)’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29

제 3 절 사실적 주장	30
□ 드라마 내용을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0
□ 재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2
□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3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업소의 사진이 게재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5
제 4 절 정정보도청구와 상대방의 고의, 과실	36
□ 정정보도청구에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36
제 5 절 정정보도청구권의 예외 사유	38
1. 정당한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38
□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38
□ 후속 보도가 게재된 경우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41
□ 이미 삭제된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42
2.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4
□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4
3.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45
□ 피해를 주고받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묘사한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5
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47
□ 판결문의 내용에 전면적으로 상반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7

제 3 장 정정보도청구의 이행방법	50
□ 방송에서의 정정보도문 표시 방법	50
□ 정정보도의 시간이 원 보도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프로그램이 원 보도 프로그램과 다를 수 있는지 여부	51

제 2 편 반론보도청구 사건

제 1 장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56
-------------------------	----

제 1 절 반론보도청구의 주체	56
-------------------------	----

- 애완전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애완전을 키우고 있는 개인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6
- 익명으로 처리된 단체의 한 관계자의 발언이 사회적인 과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해당 단체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8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일반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60
-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진 속의 인물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62

제 2 절 반론보도청구의 대상	64
-------------------------	----

- 특정 교단을 ‘이단’이라고 보도한 것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64
-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65
- 인터뷰 내용이 편집되어 진술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보도된 경우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66
- 보도 내용에 허위의 점은 없지만, 배경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69
- 소문, 풍문 등을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70

제 3 절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	71
□ 반론보도 거부사유로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	71
제 2 장 반론보도청구의 이행방법	74
□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서 ‘기고’나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74
□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며 반론보도 전후로 반론보도가 진실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보도할 수 있는지 여부	75
제 3 장 추후보도청구	77
제 1 절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	77
□ 추후보도청구권의 개념, 추후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차이점	77
제 2 절 추후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절차	78
1. 요건	78
□ 보도된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추후보도청구의 방법	78
2. 행사기간	79
□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79

제 3 편 언론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 1 장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84
제 1 절 보호범의	84
1. 명예권	84

□ 명예와 명예훼손의 개념에 대하여	84
2. 초상권	86
□ 동의 없는 사진게재행위와 초상권침해 여부	86
□ 취미생활로서의 사진촬영에도 당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88
□ 당사자의 추가적인 승낙 없이 당사자의 초상 및 사생활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89
□ 공적인 인물의 경우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한 초상권 공표를 감수해야 하는지 여부	92
3. 성명권	94
□ 발주하지도 않은 축하광고를 낸 신문사의 책임 여부	94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5
□ 사생활의 공표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95
5. 음성권	97
□ 신청인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여 방영한 경우	97
제 2 절 당사자	99
1. 주체	99
□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9
□ 정부기관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01
2. 객체	103
□ 반론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상대방’	103
제 3 절 피해자의 특정	105
□ 이니셜 표기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05
제 4 절 사실의 적시	108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108

❑ ‘삼류악단이다’, ‘형편없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을 구성하는지 여부	108
❑ 허용될 수 있는 비판적 견해의 수위는 어디까지인지	109
2. 사실 적시의 형태	111
❑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재(轉載)하여 보도한 신문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11

제 5 절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 113

1. 인과관계	113
❑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13
2. 손해의 발생 등 기타 요건	117
❑ 회사에 대한 오보와 주가 하락의 상관관계	117

제 2 장 위법성조각사유 121

제 1 절 공공성 121

❑ 범죄혐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121
--------------------------------------	-----

제 2 절 진실성 또는 상당성 122

❑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한 기사나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의 책임 유무	122
--	-----

제 3 절 그 밖의 위법성조각사유 125

❑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경우, 그 허용 한계에 대하여	125
❑ 당사자가 조건부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언론사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책임 유무에 대하여	129
❑ 사진촬영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승낙인지 여부	131

제 3 장 범죄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	133
❑ 성폭행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보도의 위법성	133
❑ 범죄혐의를 보도함에 있어서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여부	134
❑ 공인에 대한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37
❑ 수사관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토대로 범죄기사를 작성한 경우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139

제 4 편 언론보도와 조정절차

제 1 장 언론중재위원회	144
❑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44
❑ 중재부의 구성 및 중재위원의 자격	144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및 ‘중재’의 의미와 차이점	145

제 2 장 언론조정절차 일반	148
------------------------------	-----

제 1 절 조정신청 대상	148
❑ ‘인터넷 기사’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48
❑ 미등록의 ‘사보(社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50
❑ ‘가판 신문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52
❑ A4 용지에 인쇄된 ‘전단지’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52

제 2 절 조정신청 방법	153
1. 조정신청서 작성	153
❑ 조정신청서 작성요령	153
2. 조정대리	158
❑ 조정대리의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	158
❑ 미성년자의 조정행위에 관한 특칙	160

3. 조정신청기간	161
□ 조정신청 기간(Ⅰ): 일반적인 조정신청 기간	161
□ 조정신청 기간(Ⅱ): 피해자가 언론사와 직접 협의를 거친 경우의 조정신청 기간	162
□ 조정신청 기간(Ⅲ): 피해자가 언론사에게 직접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의 조정신청 기간	164
4. 조정관할	165
□ 조정심리가 이루어지는 곳을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165

제 3 절 조정사건 처리절차 167

1. 조정심리	167
□ 조정신청서 접수 후 조정심리가 진행되는 절차	167
□ 조정신청서 접수 후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방법	168
□ 조정심리에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에 대하여	170
2. 조정결과	171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정의 유형별 특징 및 그 차이점	171
□ ‘조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간 합의’와 ‘조정절차상 이루어지는 당사자간 합의’의 다른 점 및 조정절차 밖에서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73
□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174

제 4 절 조정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 176

□ 조정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76
------------------------------	-----

제 3 장 기타 사항 178

□ 신문기사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78
□ 방송사의 편집권한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179
□ 기자의 취재행위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80
□ 이미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합의되었던 보도물이 다시 보도된 것에 대해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181

제 5 편 언론보도와 법적절차

제 1 장 제소 절차 184

-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84
- 조정절차상 합의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 184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자동소제기 되는 관할은 어디인지 187

제 2 장 강제집행 절차 189

- 조정절차를 통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189
- 조정화해조서에 기재된 보도일자를 도과한 경우, 배상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 인지 191
- 언론사에서 합의한 반론보도문을 조금 다르게 게재한 경우, 반론보도문을 원래 합의한 대로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192

제 3 장 가처분 절차 194

- 인터넷 기사의 게재중단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194
- 취재한 내용이 방송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요건 195

제 6 편 언론보도와 형사사건

제 1 장 명예훼손 198

-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으로서의 위법성조각사유 198

- 마감시간에 쫓겨 사실 확인을 미처 다 하지 못한 경우 명예훼손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200
- 고소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01
-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취소되지 않은 다른 피고소인도 처벌하지
못하는지 여부 202

제 2 장 모 욕 205

-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점 205

제 3 장 기 타 207

-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기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07
-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208

제 1 편

정정보도청구 사건

제 1 장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의 개념

제 2 장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 3 장

정정보도청구의 이행방법

제 1 장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의 개념

□ 민법 제764조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의미와 정정보도

문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실무상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고 있고 조정신청사건에도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정법상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도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권리인지요.

답 귀하가 묻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정법상 근거규정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64조였습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 즉, 보도에 있어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이 존재할 때에만 행사 가능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특별법인 언론중재법이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보도 자체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	민법 제764조의 정정보도청구
의 의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신설됨 민법 아닌 언론중재법상의 특별한 소권	언론중재법상의 청구기간이 도과되거나 상대방이 언론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됨
성립요건	①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해를 입은 자(개별적 연관성) ※ 언론사의 귀책사유,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함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요구됨 ①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위법성 ③ 가해자의 고의, 과실 ④ 손해의 발생 ⑤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
행사기간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행사해야 함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구제기관	법원,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구제절차	조정절차(언론중재위원회) 본안 소송 절차(법원)	본안 소송 절차

이상과 같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요건, 행사기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는 우선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며, 신청기간의 도과 등으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언론사가 아닌 기사작성에 관여한 자를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도 내용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 중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 165등 결정)

정정보도를 가처분 절차에 의해 재판할 경우 언론사로서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신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보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언론의 위축 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언론의 공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으로,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가처분 절차가 아닌 본안 소송에 의해 재판해야 하며, 그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도 ‘소명’이 아닌 ‘증명’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결정은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한정된 것으로,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의 소의 경우 여전히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절차에 의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도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현재 반론보도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는 그 소송절차의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PLUS

증명(證明)이라 함은 법관의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합니다. 재판상의 증명은 실험 결과로 확인될 수 있는 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으로 만족하는 이른바 역사적 증명을 뜻합니다.

이에 비해 소명(疎明)이라 함은, 증명에 비하여 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 즉 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합니다. 소명은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차이점

문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며,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박 내지 주장 등의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 절차에 의해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 역시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마찬가지로 본안 소송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여전히 가처분 절차에 의해 재판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소송 절차의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근거 조문	①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② 민법 제764조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권리의 성격	①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특수한 형태의 권리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수한 형태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특수한 형태의 권리
언론사의 귀책 사유 필요여부	①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 불요 ②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 : 필요	불요
원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① 원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 ② 원 보도가 진실함을 언론사가 입증해야 함	원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음
보도문 작성 주체	언론사	반론보도청구인
보도문의 형식	“본지가(본 방송이) 지난 ○월 ○일자 ○면 ‘~’제목의 기사에서 …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는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본지가(본 방송이) 지난 ○월 ○일자 ○면 ‘~’제목의 기사에서 …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는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신청절차	임의적 전치절차	임의적 전치절차
소송 절차	본안 소송 절차	가처분 절차

□ 정정보도문에 사과문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영화감독입니다. 제가 제작한 수편의 영화가 해외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흥행에도 성공하여 점점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청순한 이미지의 톱 여배우 A양을 캐스팅하여 영화를 제작,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영화 주간지에서 제 영화에 대해 외국의 모 영화와 인물 캐릭터, 시놉시스, 내러티브 구조 등이 너무나 흡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표절했다는 그 영화를 영화제작 전에 단 한차례 관람한 사실도 없으며, 표절의혹이 나고 나서 관람해보니, 제가 제작한 영화와 전혀 판이하게 다른 영화였습니다.

니다. 근거 없는 억측으로 의혹을 제기한 그 기사로 인해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추구해온 제 이미지는 먹칠이 되었고, 앞으로 흥행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됩니다.

저와 같은 영화 산업 종사자에게는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표절 의혹은 영화감독으로서의 제 명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저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언론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함은 물론 저에 대해 십분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정보도만으로는 제가 입은 모욕을 치유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과문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언론중재법에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기 전,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64조였습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은 바로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권이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해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오직 정정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4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여러 피해자 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훼손된 사회적 평가의 회복’에 있다할 것이고 그에 부합하는 형식의 보도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래 자주 이용되던 원상회복의 방법은 ‘사죄광고(謝罪廣告)’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죄광고를 청구할 경우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형식의 사죄광고를 명하였습니다.

“본보 19◇◇년 □월 △△일자 ▽면 하단에 게재된 「○○○○○」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활발히 이용되던 이러한 사죄광고를 더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에 대해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 하여 ‘위헌(違憲)’이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죄광고제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 하면서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 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 강요하여 외부에 표시하기를 명하는 한편 의사, 감정과 맞지 않는 사과라는 도의적 의사까지 광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 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 160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는 사죄광고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형식의 정정보도문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내려진 최초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관한 판결이라고 보여 지는 것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4. 선고 91가합82923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주문에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공고문’을 게재하도록 명했습니다.

‘공고문 : 본사는 1991. 10. 6.자 제1171호 주간의 34면부터 39면까지 『노◇◇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은 「본사는 위 기사에서 노◇◇에 대한 현재의 재산상태와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이 과장되어 있다, 요트 타기를 즐겼다,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의 일부 사실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의 게재 외에 현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정정보도문입니다. 정정보도문의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일간 신문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피고 발행의 □□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예시 2) 방송의 경우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21:00 “△△△△△”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모 회사 직원들의 비리 보도에 관하여』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뉴스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귀하가 언론사에 귀하에 대한 사죄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정보도문에 언론사의 사과문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귀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게재하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2 장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 1 절 정정보도청구의 주체

1. 정정보도청구권자

□ ‘법인이 아닌 단체’도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문 지난 2004년 ○월 ○일자 ◇◇일보는 “□□에 유통기한 지난 중국산 김치”라는 제목으로 ‘수사 결과 △△식품이 19▽▽년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미국산 밀과 국산 밀을 섞어 만든 「우리밀 통스넥」 8만여kg을 국내산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A운동본부>등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A운동본부>는 농민들로 구성된 순수한 농민운동단체로서 식품유통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사가 나간 것은 아마도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 저희 단체를 혼동한 것이 아닌지 추측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해서 순수한 농민운동단체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위 보도에 대해서 저희 단체가 정정보도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 단체가 아직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에 불과한 저희 단체의 이름으로도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원칙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 엄정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소권」으로 보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근거규정인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반드시 권리능력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공법인(公法人)으로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권리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 역시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라는 것이 꼭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주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타당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관’ 및 ‘단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 규정에서의 ‘기관’이란 일반적인 기관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관은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치한 ‘이사’, ‘감사’, ‘사원총회’, ‘대표이사’ 등과 같은 인적 구성체를 의미하는 반면, 여기서의 기관은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항구적인 조직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관에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와 같은 행정각부, 국립대학 내의 각 단과대학, 국회 및 법원과 같은 곳들이 해당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기각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간법 제16조 제7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자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관청도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정부조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인 신청인(대통령비서실)은 그 업무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카기8206 판결)

“방송법 제91조 제7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엄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록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사회적 개체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하겠고, 한편 정부조직법 제38조에 의하면 ‘정부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장려한다.’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위 방송법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2. 13. 선고 2003카합14 판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신청인인 한국기자협회 충청도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바,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청주지방법원 1990. 7. 21. 선고 90카1874 판결)

다음으로, 위 규정에서의 ‘단체’란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상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할 수 있는 인적 결사(結使)’라든가 ‘학교’, ‘병원’, ‘유치원’ 등 영조물(營造物)도 이를 운영하는 법인과는 별도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식으로 ‘기관’과 ‘단체’의 개념이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판례 가운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06. 4. 28. 결정 2006가합516 결정입니다. 2006년 1월 5일자 ◇◇일보 9면에 실린 「체납관리비 ‘해고공방’」 제하의 기사에서 “○○동 ○○아파트상가변영회가 직원 2명을 해고하고, ○모 관리사무소장을 관리비 징수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여 관리사무소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보도하자, ○○아파트상가변영회측은 직원 두 명의 퇴직은 자진퇴사와 수습기간 중에 사표를 낸 것으로 변영회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며 수차례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변영회의 통보를 수취 거절한 관리소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 통보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이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아파트상가변영회’가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청구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1. 26. 선고 92카기649 판결입니다. 1992년 6월 27일자 ◇◇신문 18면에 실린 「국내외 망라한 북의 ‘주사(主思)’ 추종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조선통일범민족연합’은 재야운동권의 친북성향 인사들이 이른바 주사파 계열에 의해 장악되어,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에 대해 ‘조선통일범민족연합’이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신청인 조선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가 반론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신청인 위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나,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의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신속, 엄정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비록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사건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 위원회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하지 못하고 위원장 문△△이 구속되자 69명이 모여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강▽▽을 선출하는 등 현재까지 계속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 위원회는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1. 26. 선고 92카기649 판결)

이외에도 법원은 같은 논리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83카9145,9146),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83카22003) 등에 대해서도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였고,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85카8825), ‘기독교복음침례회’(91카81540), ‘서울○○국민학교’(93카합792), ‘천부교승리제단광주삼천년성’(94카합1029),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98카합3568), ‘◇◇◇씨 □□□□ 중친회’(99다12840)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권 내지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조정신청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수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단체가 비록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이기만 하다면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PLUS

‘권리능력(權利能力)’이란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 내지 능력을 말합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에 ‘행위능력(行爲能力)’이 있는데, 이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개념을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부터 죽을 때까지, 즉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지고 따라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20세의 성년(成年)이 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혼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유효하게 자신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절차법에서 사용되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능력’개념에 대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송능력(訴訟能力)’은 실체법상의 ‘행위능력’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당사자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이라는 개념은 절차법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적격’은 다른 말로 ‘소송수행권’, ‘주관적 소의 이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학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입니다. 최근 모 지방일간지에 저희 초등학교와 관련된 엉뚱한 기사가 나가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조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학교명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학교 법인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초등학교는 ‘◇◇학원’이라는 재단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 우선, 해당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 곧 해당 보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자는 ‘학교 법인’이라기보다 귀하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법인’의 해당 기사와의 연관성은 ‘학교’에 비해 간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피해자로 내세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자체는 ‘영조물(營造物)’에 불과하여 실체법상의 권리 능력과 절차법상의 당사자능력이 모두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이 없는 학교가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실체법상, 절차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실체법적인 권리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정보도청구권의 근거 규정인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이런 원칙에 대한 예외가 발견됩니다. 즉,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 이외에도 「사회 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이기만 하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유치원 등 영조물도 이를 운영하는 영조물 법인과는 별도로 하나의 기관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각 관청, 법원, 국립대학의 각 단과대학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이면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및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능력과 유사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론보도 심판사건에서 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으로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 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별개로 그 기관·단체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 등이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질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도 앞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공익과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선고2002다49040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나 법원에서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심판절차는 기존의 소송절차에서 보다 당사자능력을 넓게 인정하는 특수한 절차로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자는 해당 초등학교이며, 초등학교의 이름으로 조정신청도 하고 정정보도청구의 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LUS

흔히 ‘영조물’이라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본래 의미에서의 ‘영조물(營造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는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로서 ‘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영조물은 ‘영조물법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영조물법인으로서는 ‘한국조폐공사’와 같은 공사, ‘한국은행’등의 특수은행, ‘한국보훈복지공단’과 같은 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들 영조물 법인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본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공물(公物)’에 불과한 영조물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에서 말하는 영조물이란 영조물 본래의 의미와는 사뭇 다릅니다. 즉, 여기서의 영조물은 단순히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물건 또는 물적 시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이면서도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영조물이 있습니다. 학교, 병원, 유치원 등은 나름대로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는 시설이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들로서 단순한 물적 시설 또는 공물과는 다릅니다. 다만, 본래 의미에서의 영조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 개별적 연관성 :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 고인(故人)에 대한 보도에 관해 유족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방송은 지난 ◇월 ◇◇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 고(故) △△△ 화백이 대표적인 친일미술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

이 아니며, 이미 돌아가신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방송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의 정정보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입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언론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이고,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을 정정할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현재 가장 크게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하는 사람은 역시 죽은 자의 ‘유족’일 것입니다. 물론, 유족이 죽은 자에 대한 보도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보도는 ‘죽은 사람’에 대한 보도일 뿐, 살아 있는 ‘유족’에 대한 보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 대한 보도가 ‘죽은 사람’ 당사자와만 연관성을 갖는다고 좁게 해석하면 결국 죽은 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독일의 다수 학자들은 죽은 자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간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로 인해 현재 가장 크게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하는 유족이 간접적 연관성을 가진 당사자가 되어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의 입장도 사망한 자에 대한 유족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위 이○○의 양자(養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본안심사에서 가릴 문제이며,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망(亡) 이○○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상의 책임이 있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5722 판결)

이 사건은 죽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보도가 나가자 그의 양자인 원고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문제의 보도가 죽은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족의 명예, 나아가 유족의 죽은 자에 대한 명예감정 및 추모감정을 침해했다고 하여 언론사의 정정보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유족이 그 구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 존속이, 직계 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 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 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 유족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해당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가라는 점입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친일미술가다”라는 식의 보도는 일단 그 자체로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의 표시 또는 논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적 보도 역시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에서도 친일행위의 증거로 구체적인 사실들을 열거하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친일미술가라는 평가의 전제로 제시된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방송에 대해서 귀하가 죽은 자의 유족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친일미술가라는 평가의 전제가 된 사실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교원 전체에 대한 보도에 대해 교사 개인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서울 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 모 방송 뉴스의 <위기의 철밥통 교사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교사들이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교육 방식과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연봉을 보장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모든 교원은 교육방식과 내용을 끊임없이 심화, 보충하여 참다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 없는 보도로 교사 전체 집단을 매도함으로써 교사로서의 긍지와 명예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사로서 제가 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문제의 보도와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도내용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정정, 반론보도청구권이 한편으로는 공정한 여론형성과 진실한 정보 전파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고양, 신장시키는 기능을 다하기는 하지만 반면에 언론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언론의 자유의 제한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보도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별적 연관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해 판례는 과거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례에서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 하였고, 또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해서도 대동소이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를 살펴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귀하를 언급하거나 귀하를 특정해서 보도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속한 단체, 집단에 대해 보도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해 판시한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는 전혀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방송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 측 앵커가 이 사건 방송 서두에서 ‘70살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주부는 열흘 간격으로 아이를 두 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입니다’라는 말로 허위의 의료보험급여 청구 사례 두 가지를 언급한 후, 방송기자가 각 사례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밝혀내지 못한 보험심사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두 구체적 사례에서 직접 언급된 의사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이 사건 방송내용에 의하여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위 표현은 이 사건 방송의 구체적 사례에서 언급된 의사들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뿐 전체 의사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수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집단 표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의사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 구성원들 일부로서 이 사건 방송과 신청인과 사이에 어떤 직접, 간접적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0. 25. 선고 2001카합1884 판결)

판례를 살펴보면, 집단이나 단체의 구성원 일부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한 경우, 그 단체 및 집단의 구성원 수가 광범위한 경우 그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귀하를 언급하거나 귀하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귀하가 속한 ‘교원’이라는 집단의 구성원 몇몇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도로 인해 귀하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의하면 귀하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소수일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교원의 수를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이라는 집단 표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교사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를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보아 개별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귀하가 신청하는 조정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판례가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가. 신청인에 관해 이니셜 처리를 하였거나 성씨만을 언급한 경우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A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김아무개 중사”라고만 지칭하고 있으나, 기사의 내용 중에 “김○과 같은 소대의 부소대장”, “특전사 출신”등 원고 A의 군대 내 직책, 출신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 김○의 사망사건이 국민의 관심사였고 그로 인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그에 관한 수차례 보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혹은 적어도 원고 A와 같이 근무하였던 군인들이나 원고 A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김아무개 중사”가 원고 A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 A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2004나65338판결)

나. 신청인과 성명이 다르게 보도된 경우

“위 이현선이라는 가명으로 위 여성중앙에 게재된 수기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신청인의 연령, 자녀의 수와 학년, 신청인이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의 맨 윗층에 거주하는 점, 신청인의 쌍둥이 남매 중 남자인 중학교 3학년이 저녁식사 중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떨어져 사망한 점 등이 일치하여 피 신청인이 위 여성중앙에 그 필자의 성명과 그의 아들인 사망한 중학교 3학년생의 성명을 다르게 게재하여 공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을 알거나 그의 아들인 위 최○○의 사망이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은 신청인 자신이 그의 아들의 사망에 대하여 위 수기를 쓴 것이라고 오인하기에 넉넉하다.”(서울고등법원 1987. 3. 13. 선고 86나4096 판결)

다. 보도 자료에 의한 관련 보도에 의해 신원이 공개된 경우

문제의 기사에서 실명을 직접 지명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에 따라 타 언론사들이 실명을 공개한 경우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각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위 각 기사에서 말하는 위 ‘5·1동맹’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13명 중에 포함되고 위 ‘5·1동맹’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1995. 9. 5. 자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3명의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신청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 각 기사에 보도된 구속자 13명 중에 신청인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은 위 각 기사와 개별적인 관련성이 인정 된다.”(서울지방법원 1996. 1. 25. 선고 95가기5816 판결)

라. 취재 내용과 보도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보도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내부를 비추고,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이라는 자막을 표시한 상태에서 일부 신청인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내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에 대한 상납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유홍업소들의 소재지가 강남구청 관할 내인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관할 구청이 불법영업을 묵인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앞부분에서는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방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유홍업소 주인들로부터 상납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들이 신청인 공무원들이 속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과 이 사건 방송내용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7. 26. 선고 2001카합1414 판결)

마. 일정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소속인의 경우

일정단체나 학교 등을 지명한 경우 당해 단체나 학교 등에 소속된 사람이 소수라면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위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의 주인공이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으로서 여학생이라고 보도되었고, 한편 당원의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모두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총 48명중 11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위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1995. 1. 21. 선고 94카기4881 판결)

제 2 절 정정보도청구의 객체

□ ‘광고(廣告)’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최근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려다가 몇몇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연계한 해당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고,

여론 형성을 위해서인지 지역 신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이 발생하여 위험하다’는 식의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광고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 다이옥신 등이 배출될 수 있는지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에 문의해 보았으나 안전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연일 지역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위와 같은 잘못된 광고로 인하여 여론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광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답 정정보도청구란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언론사는 수정, 삭제 등 편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보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정정보도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는 다릅니다. 광고는 언론사가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광고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해당 언론사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광고는 언론이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 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1. 30. 선고84다카34374 판결)

물론, 판례 중에는 ‘의견광고란의 성명서’에 대해서 반론을 허용한 예외적인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11. 25. 선고 83카22003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광고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론(時論)’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지난 2004년 ○월 ○○일자 ◇◇일보 ‘시론’란에 남북협력기금에 관련된 A대학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위 글에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귀하가 문의하신 기사는 첫째, 순수한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의 표현 내지는 논평에 가까운 글이라는 점, 둘째,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의 글이 아니라 외부기고자(모 대학의 교수)에 의해 쓰인 글이라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므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어떤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사가 사실 보도인지 아닌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가 사실 보도인지 혹은 의견표현인지를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흔히 사실이나 칼럼 등은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라고 여기지만 이런 유형의 기사에도 사실주장과 의견, 논평 등은 혼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사실 보도가 주를 이루는 스트레이트성 기사도 꼼꼼히 살펴보면 의견, 논평 등이 있습니다.

결국 거의 모든 기사에는 사실 보도와 의견, 논평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의견과 사실 중 어느 것이 전면에서 서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기사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99다12840, 90다카25468).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도 단지 해당 시론이 의견표시나 평가적인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정보도청구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위 시론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적 주장의 형태’가 문제됩니다. 즉, 언론에 의한 사실 보도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실을 언론사가 자신의 주장으로 직접 보도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타인의 말을 인용 보도하거나 타인의 원고를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장이라든가 공소장, 다른 기관의 공문 등을 그대로 기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 형식이나 공표 방법 등 보도 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보도에 사실적 주장이 담겨

있는 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들이 피신청인이 직접 취재하여 기사화한 것이 아니라 대한치과의 사협회 소속 회원이 피신청인에게 투고한 글을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는 일반적인 기사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그 보도의 형식을 불문한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11. 선고 87카40175판결)

결론적으로 외부기고자에 의한 시론에 대해서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만평(漫評)’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시청 공보실에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 200◇년 ◇월 ◇◇일 저희 지역에 서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이 뇌물수수죄로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치러진 불명예스러운 선거였지만, 선거는 무리 없이 치뤄져 현재는 신임 시장이 시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시청에서는 전임 시장의 궐석기간 동안에 노후한 시장실을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장실 개조공사를 두고 저희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 만평(漫評)란에서 시장실을 교도소처럼 개조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만평은 위와 같이 개조된 시장실을 사용하게 된 신임 시장은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 시청 직원들이 보기에 이건 좀 너무한다 싶습니다. 전임 시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도 속상한 일인데, 시장실이 교도소처럼 개조되었다는 보도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만평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겠는지요?

특히, ‘시장실을 교도소처럼 개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정하고 싶습니다.

답 이 사안의 핵심은 만평의 내용을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만평(漫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이란 시사적 문제나 인물 등에 대한 ‘풍자적 만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만평은 한 두 컷(Cut)의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만평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 판례가 있어서 이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의 경우에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이처럼 만평이 보도의 기법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만화가의 주관적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고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압축·과장·단순화·왜곡·비유·비난의 방법이 동원되는 까닭에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만평 역시 보도의 기법 중 하나이고, 해당 만평이 적시하고 있거나 전제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의해서 당사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만평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의 만평이 적시하고 있거나 전제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을 도출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평이 적시하고 있거나 전제하고 있는 사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만평’으로서의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의 판례(99다6203)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한 두 컷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카툰)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인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이 적시 또는 표현되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자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만평은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낸 바 있는 김모씨(이 사건의 원고) 등이 97년경 일어난 외환위기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공항출국장에서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모씨는 ‘원고는 해외로 도피하려는 의도를 가지

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가 외환위기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거나 도피를 모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해외로 도피하려거나 도피를 모의하고 있다')은 만평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만평이 표현하고자 한 사실이 아니며 풍자적 외피 내지 은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각 만평의 경우에도 원고 등 3인 또는 5인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 도피를 논하고 있는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상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각 만평이 원고 등이 해외 도피를 계획하거나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만평은) …… 원고 등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이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항 출국장을 빌려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원고 등이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명한 것일 뿐,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해외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귀하가 문의하신 이번 사안 역시 만평에 관한 것이기에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는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밝힌 해당 만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만평에서도 어떤 인물 또는 사건에 대한 견해가 은유적 또는 풍자적 방법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새로 개조된 시장실이 교도소와 같다’는 내용은 이 사안 만평에서 풍자적 기법이 가장 강하게 사용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은 99다6203 판결에서 말하는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해당되고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은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만평이 보도된 시점 전후의 사정, 곧 전임 시장이 뇌물수수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일, 이 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신임 시장이 선출된 일 등을 고려해볼 때, 해당 만평은 신임 시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렴결백하여 전임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평과 유사한 ‘만화’에 대해 조정(당시 중재)이 신청된 사례가 있어서 다음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2000대구중재1)는 ○○일보의 ‘쏘가리’라는 제목의 네 컷(Cut)짜리 만화가 문제된 것입니다. 위 만화는 두 남자의 대화 장면과 함께 “고위직은 모두 특정지역 사람”, “심지어 파출소장도”, “말마, 통반장까지 그 지역 사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정부(국정홍보처)에서는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장관급 인사의 출신지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등의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측 언론사가 즉시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주고 신청인측에서는 중재신청을 취하하므로 종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2002서울중재141)는 ○○신문의 ‘16강보다 어려운 서민 되기’라는 제목의 12컷짜리 만화가 문제된 것입니다. 위 만화는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 후보가 1일 환경미화원이 되어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만화에서 특히 문제된 내용은 환경미화원들과 헤어진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로고가 새겨져 있는 승용차에 올라탄 후에 “가까운데 사우나 어디 없나 찾아봐! 냄새나서 죽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해당 만화가 이 후보의 ‘국민 속으로’ 행보를 기만적인 행위로 묘사했다고 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신청인측 신문사가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당시 조정(당시 중재사례)사례의 결과는 앞서의 판결 결과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신청사건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소송에서도 신청인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문제된 만화들(특히, 두 번째 사례에서의 만화)이 본래 의미의 ‘만평’인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결국, 만평 혹은 풍자만화들이 표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사실들을 해당 만평 혹은 만화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보도내용 중 ‘새로 개조된 시장실이 교도소와 같다’는 부분에 관해서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해당 만평의 은유 내지 풍자적 외피로 본다면 이러한 정정보도청구는 해당 만평이 적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전재기사(轉載記事)’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문 모 지방일간지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로 인해서 해당 신문에 항의를 하니 해당 기사는 자신들이 쓴 기사가 아니며 모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 신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당 신문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해당 신문을 상대로는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어느 언론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답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이기만 하면 되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편집의 형식이나 공표 방법 등 사실 보도의 형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사가 ‘연합뉴스’나 ‘뉴스스’와 같은 뉴스통신사 기사를 전재 또는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거나 다른 신문의 기사 그대로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인 경우에도 위 기사들이 해당 언론사의 지면을 통해서 공표된 이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즉, 정정보도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해당 기사의 원 출처가 아니라 해당 기사가 실제 공표된 지면입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은 ○○동에 있는 위 토지가격의 축소신고에 관한 기사를 199◇. ◇. ◇◇. 자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피신청인이 다른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신청인의 신문에 게재한 이상 그 내용 중의 사실적 주장은 피신청인의 그것을 게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3. 7. 30. 선고93카합312 판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가 연구비관의견 또는 견해에 관한 발표를 요약, 인용한 것으로서 반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청구권의 목적이 언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9. 5. 27. 선고 98나64969 판결)

이와 같이 전재기사 내지 인용보도의 경우에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정보도 청구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의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 제도는 보도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피해자와 관련성만 있으면 인정되는 형식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기대등의 원칙상 피해자가 공표 매체 모두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할 수 없다면 정정보도로 인한 구제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재하여 보도한 신문사들을 상대로 한 조정사례(당시 중재사례)로는 ‘97부산중재2’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2개의 중앙일간지와 1개의 지방일간지는 모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재하여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의 부모는 뉴스통신사가 학교측의 말만을 듣고 학교와 교사편에 서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뉴스통신사 및 3개의 일간지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보도가 설령 뉴스통신사나 다른 신문사의 기사를 전재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표의 주체인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귀하는 공표의 주체인 해당 신문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 절 사실적 주장

□ 드라마 내용을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 현재 ○○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 중인 ‘◇◇의 □□’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드라마에서 ‘△△△컨설팅’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몹시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의 ‘△△△컨설팅’과 상호, 업무내용 등이 아주 유사한 ‘△△△투자자문’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실제 존재하고 있으며 아주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 ‘△△△투자자문’의 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해당 드라마로 인하여 저희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회사에서 위 드라마의 제작사인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권 혹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답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혹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해당 드라마에서 묘사한 내용이 ‘사실의 적시’ 혹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흔히 ‘드라마’는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오락성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묘사된 내용의 대부분은 완전한 허구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각색된다할 것이어서 드라마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로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조정신청 사건 중에는 통상의 드라마보다 그래도 사실에 가까운 역사드라마에 대해서조차 드라마에서 묘사된 내용을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예가 있습니다.

“방송법 제91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상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로서 입증가능하며 그 완전성과 정확성의 심사가 가능한 진술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재대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태조 왕건」 프로그램이 비록 역사적 사실을 각색한 것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예술성과 오락성을 위하여 허구의 내용을 담은 드라마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2001서울중재352)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의 해당 드라마의 내용 역시 사실적 주장 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드라마를 이유로 정정보도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재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현재 ○○방송에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제 이복 언니가 출연하여 저희 가족사에 관하여 재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알콜 중독에 여자관계가 문란하였으며, 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정정보도청구권 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답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혹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해당 드라마에서 묘사한 내용이 “사실의 적시” 혹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의 적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살펴겠습니다. 재연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오락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와는 달리 내용이 완전한 허구이거나, 상당히 내용이 각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귀하가 문의하신 프로그램은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하며, 시청자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프로그램은 비록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약간의 허구를 가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관한 드라마가 방송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에서 묘사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드라마의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면 비록 그 형식이 다소의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5가합79818판결)

다음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 유족인 귀하가 정정보도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 존속이, 직계 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 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귀하는 인격권을 침해당한 고인의 직계 비속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최근 <독도는 없다>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근거 없이 불고 있는 독도 수호 열풍에 대해 비판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가 일본의 도서이므로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방송국의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독도 수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출연자가 제 저서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출연자의 발언 내용은 저희 집안이 일제 때 후작 작위를 받았을 정도로 골수 친일파집안이며, 제가 한국을 매도하는 내용의 강의로 일본의 모 대학에서 교수 임용을 약속받았고, 그런 이유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의 소신이고, 학문적 양심입니다. 저희 집안이 대대로 친일파 집안이라는 것도, 제가 일본의 모 대학에서 교수 임용을 약속받았다는 것도 전혀 사실 무근의 주장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모 방송국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 귀하의 질문에서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 중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토론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이 출연하여,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과정입니다. 생방송의 경우 토론자의 발언 내용이 방송사의 기획 의도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가 이를 편집하여 방송할 수 없으므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과는 그 성질이 달라,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일방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다른 토론자들이 반박할 수 있으므로 반대 사실의 주장을 통한 피해자의 구제 및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 반론보도 제도의 취지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실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 반론보도를 허용할 경우, 일방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반대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도 정정, 반론보도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토론 과정이 정정, 반론보도를 통하여 계속되는 듯한 결과가 될 뿐인데 반해, 방송사는 매회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자신이 편집, 통제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정정, 반론보도를 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국 우리사회의 현안에 대한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 자체가 퇴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토론자들을 특정한 의견을 가진 자들로만 구성하거나 토론 방식이나 진행 등을 편파적으로 하는 등으로 토론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카합2433 판결)

결론적으로, 토론을 개최한 방송국이 토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진행에 있어 토론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자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업소의 사진이 게재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현재 충북 ○○군에서 ‘부동산◇◇◇’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일보에 ‘땅 사기 판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면서 기사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희 업소 사진이 실렸습니다.

보도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해보면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땅 사기가 많다는 것인데 신청인의 업소가 위치한 ○○군은 △△도청이 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곳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저희 지역으로 △△도청이 이전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뭔가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업소는 땅 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실한 업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소명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진을, 그것도 상호부분이라도 보이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조차 하지 않은 채 게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큰 기사에 대해서 「저희 업소는 땅 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

답 이 사안에서의 해당 기사는 흔히 말하는 ‘고발성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발성 보도는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정적인 사함을 다루는 것이 보통인 만큼 통상적인 기사보다 관련자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해당 기사의 취재 및 편집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권익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 지역 일대에 땅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해당 기사가 처음부터 귀하의 업체를 사기를 일삼는 부동산 업체로 보도하고자 의도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해당 기사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 내지 기사의 참고자료 정도로 부동산 업소 사진을 게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진은 편집 과정에서라도 상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해당 업소가 어느 업소인지 식별하는 것이 어렵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처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보도된 것은 명백한 해당 신문사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모 뉴스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보도하면서 그 증거로서 문을 닫은 중고기계 거래 상가를 비추었는데, 정작 화면에 나온 어느 중고기계거래 업체는 문을 닫은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중고기계거래 업자의 정정보

도청구를 해당 중재부에서 받아들인 경우(2004서울중재204)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충북 ○○군 소재 ‘부동산◇◇◇’는 △△도청 이전과 관련한 부동산사기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 절 정정보도청구와 상대방의 고의, 과실

□ 정정보도청구에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문 지난 ○월 ○일 ◇◇청에서는 ‘가짜 해양심층수 판매업체 적발’이라는 제목 하에 “국내 업체들이 지하수에 소금,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여 가짜 심층수를 제조, 판매해오다가 적발되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저희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A방송사는 뉴스 프로에서 가짜 해양심층수 판매업체 명단에 저희 회사를 포함시켜 마치 저희 회사 역시 가짜 해양심층수를 제조, 판매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업체가 ◇◇청으로부터 적발당한 혐의는 가짜 해양심층수 제조 및 판매가 아니고 해양심층수에 대한 과장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가 나간 직후 저희는 ◇◇청과 해당 방송사에 항의를 하였고, 그러자 ◇◇청 담당 공무원마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사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 먼저, 귀하는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됩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법 자체에 의한 특수하고 독립적인 권리로서 보도내용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에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귀하는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는 해당 방송사와 대한민국(◇◇청이 국가기관이므로)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한민국의 기관인 ◇◇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방송사의 오보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방송사와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다만, 이 사안에서 해당 방송사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해당 보도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비록 허위의 보도이기는 하지만 보도할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 해당 방송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송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피고 언론사들이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서 신속성을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부장검사인 데다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7. 선고 2000가합68769 판결)

그러나, 만일 언론사가 ◇◇청의 발표를 그대로 믿은 것에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언론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귀하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해당 보도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부분은 면책될 가능성도 크다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까.

제 5 절 정정보도청구권의 예외 사유

1. 정당한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에 살고 있는 한 주민입니다.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적절한 용어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방송과 신문에 연일 집창촌(集娼村)에 대한 보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집창촌 두 곳이 있는데 바로 '미아리 텍사스'와 '청량리 588'입니다. 문제는 위 두 집창촌 모두 그 명칭과 실제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에게 '미아리 텍사스'로 알려진 집창촌은 강북구 미아동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곳은 오히려 성북구 하월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588'로 알려져 있는 집창촌 역시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행정구역상 명칭은 동대문구 전농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미아동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아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미아리 텍사스는 행정구역상 강북구 미아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 하월곡동에 소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러한 청구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는지요?

답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은 이러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언론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의 형식성을 다소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귀하가 ‘미아리 텍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위와 같은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정당한 이익의 존부는 원문보도와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을 비교하여 판단하되, 양자간에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의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목적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 818 판결)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반론 기사를 요구한다든지, 원문 보도를 왜곡 해석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익이 없다.”(수원지방법원 1991. 11. 20. 선고 90카 18577 판결)

이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으려면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보도된 내용이 원 보도상 지엽말단(枝葉末端)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귀하의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이 행정구역상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하고 있다」)이 실제 보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귀하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아리 텍사스’라는 용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도출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미아리 텍사스’라는 용어는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창촌 중의 하나를 가리키는 일종의 고유명사 정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정보도청구의 목적이 언론에 의해서 공표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데에 있지 언론의 잘못된 용어 사용을 바로 잡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미아리 텍사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원 보도의 해석상 해당 신문이나 방송이 「‘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이 행정구역상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고 치더라도, 과연 해당 집창촌의 행정구역상 위치가 어디인지 문제는 원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큼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3서울중재442 정정보도청구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의 방송은 ‘부부 스와핑’ 현상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은 스와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방영하며 “경기도 ○○의 한 펜션에서 3, 40대 부부가 모여 스와핑을 한다....”라는 기자의 멘트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시는 스와핑이 이루어졌다는 장소는 ○○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해당 중재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조정신청(당시 중재)을 기각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 제18조 제1항의 규정과 방송법 제91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이라 함은 보도에 그 성명이나 초상이 공표되거나 그 내용에서 자신과의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평가를 침해받았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원문기사의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어 있고,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재대상보도를 살펴보면 경기도 ○○의 한 펜션에서 부부 스와핑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미미하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며 결국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003서울중재442)

결론적으로, 관련 보도에 대해서 귀하가 「‘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이 행정구역상 성북구 미아동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면 정당한 이익의 결여로 인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큼니다.

□ 후속 보도가 게재된 경우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문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제가 미스코리아 출신의 모 탤런트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는 기사가 모 신문에 게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의 추측성 기사였으며 저의 정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말도 안되는 기사였으므로 모 신문사에 항의하여 후속보도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모 신문사는 원래 기사가 게재된 신문지상에 후속 기사를 게재하지 않고, 모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모 신문사에서는 “누가 요즘 종이로 된 신문을 보느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배려해 줬는데 왜 그러느냐”며 제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후속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제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는 것인지요.

답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겠습니다. 만일 후속 보도가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에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후속보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 언론중재법에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속보도라는 것이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임의대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정, 반론보도의 경우에 갈음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은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인격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가능한 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원 보도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보도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후속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과연 상당한 방법인지 문제됩니다. 신문사의 의견

대로 오히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열독률이 보다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의 소비자 층이 완전히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귀하에 대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오프라인 신문에서 읽은 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속보도를 읽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 보도문가 행하여진 지면과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귀하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후속 보도에 관계없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미 삭제된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문 저는 모 방송국 아나운서입니다. 3년전에 결혼하여 현재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인터넷 신문에 제가 사기결혼을 당했으며 좋지 못한 이미지 때문에 뉴스 앵커도 그만두게 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제가 항의하여 기사는 이미 삭제되었습니다만 이미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에 의해 소문은 파다하게 퍼진 상황입니다. 이미 삭제된 기사에 대해서도 제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 우선 귀하의 기사가 보도된 신문이 조정대상 매체인 인터넷 신문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언론중재법상 조정 대상 매체에 해당하는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 제2조 제5호상의 인터넷 신문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위해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기사가 보도된 신문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미 삭제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 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삭제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동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비록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출판이 인간의 존엄성에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이렇듯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바탕을 둔 권리인 것입니다.

귀하에 대한 기사는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사로 인해 귀하에 대한 나쁜 인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그 나쁜 인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유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귀하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나쁜 인상을 제거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사가 이미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미 기사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신문이 신문법상의 독립성과 지속성의 요건을 갖춘 신문이라면 귀하는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목적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문 저는 주름개선에 효과가 탁월한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 등 여러 방송사들이 제가 수입, 판매하는 화장품이 “가짜 보톡스”이며, 주름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부작용까지 있고, 무엇보다 원가가 수 천원에 불과한데 몇 십만 원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아주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써보고는 주름개선 효과를 보고 있으며, 저희들은 그러한 사례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원가도 터무니없이 축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잘못 보도한 위 방송사들에 대하여 정확한 원가와 제품의 효능,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들에 대해서 알리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에 문제는 없겠는지요?

답 이 사안에서의 방송들은 모두 귀하의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사실적 주장을 공표했으므로 각 방송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귀하가 정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귀하의 업체나 상품을 광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정보도청구의 내용 중에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정보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판례도 다음에서 보는 사례와 같은 경우에 해당 반론보도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신청인(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정노력을 도외시킨 채 신청인이나 그 소속 PD들이 마치 연예계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하여 방어적 반론권 내지 보충적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사가 연예계 비리 사건에 신청인이 연루되었거나 그와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보도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적 반론권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은 신청인의 자정노력 등에 관한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서울지방법원 1995. 7. 5. 선고 95카기1885 판결)

위 판례의 취지상 해당 정정보도청구가 꼭 물품의 판매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적인 홍보를 의도하기만 하면 역시 위 상업적인 광고라고 보아 다소 ‘상업적인 광고’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 내용 중에 원가 등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즉 신청인의 화장품이 주름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식의 정정보도 청구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위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3.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피해를 주고받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묘사한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편파적인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몇 해 전 한 남자를 알게 되어 약 3년 정도 사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큰 상처만을 안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맞고소를 일삼았고, 결과적

으로 그 남자는 저의 고소로 인해서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방송된 〇〇방송의 모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하기는 하였지만 저는 단번에 그 이야기가 저희에 관한 것이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해당 방송에서 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남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고 가해자로 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 내용 어디에도 제가 그 남자로부터 받은 심적인 고통과 억울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취재 경위를 알아보니 그 남자의 일방적인 제보에 의해서 제작된 프로였습니다.

저는 해당 방송에서 제가 입은 피해와 억울함이 같이 언급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고 그 남자가 저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생략한다면 공정한 방송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제가 입은 피해 사항의 보도를 위해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답 해당 방송이 귀하에 관한 사실 내지 사실적 주장을 공표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귀하가 위 보도로 인해서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명백해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자로서 해당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할 정정보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청구하는 정정보도에 위법한 내용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여기서 「위법한 내용」이라 함은 민·형사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거나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당장에는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공공의 관심 사안이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보도된 것이라면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입증되기만 하

면 보도의 위법성이 없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요구받는 해당 언론사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정정보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언론사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합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역시 반론보도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그런데 인용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신청부분은 대부분이 원 방송 내용에 비추어 제3자(제보자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방송될 경우 명예 등 (제3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신청인의 인용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38 판결)

위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제3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도 귀하가 현재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 판결문의 내용에 전면적으로 상반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영화배우입니다. 최근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끝에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전 소속사에 대해 계약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법원 판결을 전혀 사실무근의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결과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취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언론중재법은 예외적으로 중재부의 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21조(결정)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조정 및 중재 기능만이 부여된 중재부가 사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가급적 엄격하게 절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21조 제2항에서 기각 사유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 주장이 아닌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경우 (법제14조 제1항)
2. 해당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은 자가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3.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법 제15조 제4항 제1호)
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법 제15조 제4항 제2호)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법 제15조 제4항 제3호)
6.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법 제15조 제4항 제4호)
7.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일 때 (법 제15조 제4항 제5호)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 중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일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은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은 심판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국회나 집행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그 밖에 정치적, 사회적 단체, 매스컴 등도 법관의 재판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언론, 정치, 사회단체 등이 재판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 비판이 재판의 내용 그 자체에 간섭하는 것이거나, 사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법관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실인정이나, 유·무죄의 판단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도의 비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기사의 내용은 법원의 판결, 그 중에서도 사실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법관의 사실인정 그 자체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사실 인정에 대한 비판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5호에 저촉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귀하의 청구는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청구이므로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제 3 장

정정보도청구의 이행방법

□ 방송에서의 정정보도문 표시 방법

문 중재위원회나 법원이 방송사에게 정정보도를 명할 경우, 어떤 식으로 명령 하나요? 정정보도문을 자막으로만 게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 중재위원회나 법원이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명할 경우, 그 통상적인 형태는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 직원들의 □□ 보도에 관하여』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뉴스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같습니다. 즉, 정정보도문을 자막으로만 아니라 진행자의 음성으로도 보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적절한 정정보도문 보도 형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원 보도가 공표된 것과 동일한 채널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기대등의 원칙’인 셈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통상적인 정정보도문의 문구 역시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규정에서 원 보도와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의 효과가 대등하도록 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도록 한 것입니다. 대개의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각적으로 전달되기에 무기대등의 원칙상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 역시 시청각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 타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특성상 시각적 전달 방법에 의해서만 보도문 게재가 가능할 것이고, 이와는 정반대로 라디오와 같은 방송매체는 해당 매체의 특성상 청각적 전달 방법에 의한 보도문 게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 정정보도의 시간이 원 보도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프로그램이 원 보도 프로그램과 다를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현재 서울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중고 공작기계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 뉴스에서 ‘위기의 중소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의 현실을 보도하면서 그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저희 업체의 상호가 클로즈업 되어 보도되기 직전, 기자는 “하지만 중고기계거래 상가는 썰렁합니다. 기계를 사서 창업을 하거나 설비를 늘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라고 멘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셔터를 내린 저희 업체의 전경과 상호가 있는 간판이 모두 방영되었습니다. 위 보도대로라면 누가 보나 제가 운영하는 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해 큰 이윤을 남기고 있지는 못해도 그럭저럭 업체를 운영해오고 있고,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문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보도 화면에 비친 셔터를 내린 부분은 저희 업체의 옆면으로서 도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소음 및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항상 내려져 있을 따름입니다. 사실 확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오보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방송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는데, 어제 방송사로부터 저희 업체 상호가 화면에 비친 것은 불과 2초 동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정보도 역시 2초를 넘길 수 없고, 또한 원 보도가 나갔던 9시 뉴스에서 정정보도를 하기는 곤란하고 해당 방송사에서 제작, 방영하고 있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보도해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위와 같은 방송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요? 만일 타당하지 않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단, 이 사안의 경우에 해당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귀하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해당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즉,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러한 오보가 나간 데에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지 않은 방송사측의 과실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나아가 그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 또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에서의 쟁점은 방송사측이 귀하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정정보도의 길이와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먼저, 현행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문에 자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적정한 정정보도문의 보도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개정되기 전의 구 정간법 및 구 방송법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에서 자수제한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정간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⑤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구 방송법 제41조(정정보도청구권) ⑤정정보도문(현재의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처럼 자수 제한이 규정되어 있던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에 대해서조차 법원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방송법상 정정보도청구권(현재의 반론보도청구권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것은 방송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형성에 미치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는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이 규정하는 정정보도문의 자수 제한

은 혼시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이 방송을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문보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관한 간결한 기재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정정보도문의 자수가 원문보도문의 자수를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그러므로, 자수 제한 규정이 삭제된 현재의 제도 하에서 단지 원 보도상의 방송 시간을 가지고 정정보도의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보도문의 자수나 방송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화면과 내용을 적절히 조화시켜 보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정보도의 ‘방법’입니다.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장소는 앞에서 살펴본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로 … 이를 하여야 하며 …”에 따라 원 보도가 공표된 채널과 동일한 채널이면 됩니다. 즉, 채널만 동일하면 되지 프로그램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 「TV속의 TV」(MBC), 「TV비평 시청자데스크」(KBS), 「열린TV 시청자 세상」(SBS)과 같은 옴부즈맨 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원래의 프로그램보다는 가능하면 위와 같은 옴부즈맨 프로에 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채널만 같으면 된다고 해서 그야말로 아무 프로에나 내보내면 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원래의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대나 시청률, 방송 내용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원 보도와 같은 프로에서 비슷한 정도의 길이와 분량으로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를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구 방송법 제41조 제6항, 구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 및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적용해야 할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방송의 시간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 …… 방송사가 공표한 내용은 ‘정정보도신청인 등이 북한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인 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국가의 안보와 교육, 사회 등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문보도와 같이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 비추어, 방송사가 뉴스 중간 시간에 원문보도를 한 데 대하여 뉴스 시작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한 원심의 조치를 타당하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따르면 같은 채널의 다른 프로에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는 것이 원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지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 2 편

반론보도청구 사건

제 1 장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제 2 장

반론보도청구의 이행방법

제 3 장

추후보도청구

제 1 절 반론보도청구의 주체

- 애완견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개인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애완견을 몹시 좋아하고 그래서 두 달 전에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 애완견 한 마리를 사다가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TV에 보도된 애완견에 관련된 뉴스를 보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저의 애완견을 팔아야겠다고 나오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보신 뉴스는 최근 지방 소도시에서 일어난 애완견에 의한 기생충 감염 사례를 보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 뉴스에서 보도한 피해 사례는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애완견이 위험하다거나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다는 식의 보도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애완견에 대한 정기적인 구충 및 위생관리만 잘 이루어지면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저의 말 보다는 방송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반론보도라도 내보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애완견을 사랑하고 현재 키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위 방송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에 해당 방송에 관해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언론중재법 제16조 제 1항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99다12840)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해당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나타난 이 사안의 정황을 살펴보면, 일단 해당 방송에서 귀하가 직접적으로 지명되거나 언급되지는 않은 듯합니다. 또한 이 사건 보도는 애완견에 의한 기생충 감염 사례를 보도한 후 애완견 일반의 문제점 내지 위험성을 다루고 있다고 보이므로, 귀하가 단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해당 방송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귀하가 단지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문의한 사안과 유사한 조정신청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송과 마찬가지로 모 방송사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이 “질병의 사각지대, 애완동물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애완동물에 의한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해당 방송사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애완동물 애호가들의 많은 항의성 글이 올라왔고 급기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두 곳에서 해당 방송에 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 신청(당시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위 조정신청사건은 신청인들이 해당 방송과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재부에 의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중재부가 밝힌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법 제91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언론 보도에 그 성명이나 초상이 공표되거나 그 내용에서 자신과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재대상 보도를 살펴보면 신청인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실이 없고, 신청인들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방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들과 중재대상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을 법 소정에 의한 피해 당사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004서울중재92)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 귀하는 해당 방송에서 직접 언급된 사실도 없고, 귀하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방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귀하가 신청하는 조정사건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 익명으로 처리된 단체의 한 관계자의 발언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해당 단체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현재 ‘○○지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균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지역 관공서의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이 신문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동쪽으로는 신행정수도와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균형개발차원에서라도 ◇◇은 서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와 같은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저희 연구원에 보도에 나온 내용이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은 저희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 연구원 내부사람 중에는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도에서는 ‘○○지역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서 딱히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야 합니까?

답 사회적으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를 하는 것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보도 유형입니다. 그런데 단체나 기관의 관계자의 말이 단순한 사견(私見)에 불과하고 해당 단체나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르다면, 해당 단체나 기관에서는 반론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단체나 기관 내부에 언론사측의 인터뷰 요청에 실제로 응한 사람이 있고 그의 발언의 취지가 왜곡 보도되었다고 한다면, 「발언자 본인」이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반론보도청구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대개의 기사에서는 발언자가 익명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고, 발언자 스스로도 발언 사실을 숨기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단체나 기관이 ‘해당 보도 내용은 단체나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에 소속된 ‘관계자’의 발언을 담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가 ‘단체’ 자체일 수 있는지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즉, 개별적 연관성이 문제됩니다.

일반적인 개별적 연관성에 대해서 판례는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해당 단체명이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단체 자체가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할 이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체명이 보도에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해 보건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과 정정보도 신청인과의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위 기사는 국정감사활동 중 신청외 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및 이에 대한 동 신청외인의 답변에 관한 기사로서 동 기사 중 「파스퇴르」라는 말이 들어 있으나 이는 최□□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질 뿐 위 기사 내용만으로는 동 기사와 신청인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외 최□□는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신청외 주식회사 △△낙농의 대표이사인데 동 △△낙농이 개간한 토지로부터 인근 저수지로 토사가 유입되어 동 저수지의 저수량이 줄어들게 된 사안에 대하여 위 국정감사가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사는 신청외 주식회사 △△낙농 및 그 대표이사인 위 최□□에 관한 기사일 뿐 신청인에 대한 기사가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8. 18. 선고 88카62228 판결)

이 판례에서 해당 기사가 해당 단체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에 대한 동 신청인외의 답변에 관한 기사로서 동 기사 중 「파스퇴르」라는 말이 들어 있으나 이는 최□□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질 뿐 위 기사 내용만으로는 동 기사와 신청인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판시 내용을 토대로 문제의 기사 내용을 추측해보건대, 아마도 기사 중에 「파스퇴르 사장 최□□」라는 식으로 해당 회사가 지명되었던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회사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배척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

사명에 대한 언급이 “최□□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쟁점 역시 해당 보도에서 귀하의 연구원 이름을 언급한 것이 독자의 눈에 단순히 발언자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지 아닌지입니다. 만일 단체에 대한 언급이 발언자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 내지 수사에 불과하다면 해당 연구원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는 배척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해당 기사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연구원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단순히 발언자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자의 발언 내용이 해당 연구원의 연구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연구원 관계자의 말이라는 이유로 발언자의 사견(私見)이 아닌 연구원의 입장으로 해독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단체에 의한 반론보도청구도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사안에서 만약 발언자의 발언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거나 연구원의 연구 사업과 내용적으로 아주 무관한 것이었다면 앞서 제시한 판결(88카62228)과 같이 단순히 ‘발언자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일반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업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상사’라는 상호로 ◇◇엑기스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 ○일자 뉴스에서 ◇◇엑기스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을 보도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엑기스에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자들이 ◇◇엑기스에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방송된 다른 방송사의 프로에서는 ◇◇엑기스에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엑기스에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아직 학계에 서조차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문제인데 해당 방송에서 들어있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방송에서 ◇◇엑기스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를 특정하여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엑기스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위 방송에 대해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론보도를 청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만일, 저 혼자서 해당 방송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엑기스 제조업자들의 모임인 ‘대한◇◇엑기스제조업협회’에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답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99다12840)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해당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나타난 이 사안의 정황을 살펴보면 일단 해당 방송에서 귀하의 업체 ‘□□상사’가 직접적으로 지명되거나 언급되지는 않은 듯 합니다. 또한 이 사건 보도가 어느 특정업체에서 생산되는 ◇◇엑기스의 문제점만을 다룬 것이 아니고 ◇◇엑기스 일반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귀하의 업체가 ◇◇엑기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방송과 일반적 연관성이 있는 것에 불과한 귀하나 귀하의 업체는 해당 방송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연합체가 해당 방송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때, 연합체라고 해서 반드시 해당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만한 유사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람 잡는 타이어’라는 제목으로 재생타이어는 파손의 위험이 높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위 방송에 관해 재생타이어 생산업자들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있는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이 반론보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이 직접 언급된 바는 전혀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방송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에서 재생타이어가 결함이 많아 위험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방송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송내용만으로 재생타이어를 생산하는 위 43개 업체 모두가 위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위 재생타이어 생산업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인 신청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방송과 신청인과 사이에 어떤 직접, 간접적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방송법 제91조 제1항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71684 판결)

참고로 위 사건에서 신청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결국 대법원(2002다47914)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이 사안에서 귀하나 귀하의 업체뿐만 아니라 동종업자들의 조합 역시 해당 방송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진 속의 인물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청 공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사주간지 ◇◇◇◇ 최근 호가 저희 회사에 대한 기사를 다룬 관계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 잡지는 ‘성추행에 화나고 감전사고에 겹먹고’라는 제목으로 저희 회사 직원인 중간 간부 한 명이 부하직원인 여직원들을 술자리로 불러내서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기사와 더불어 같은 지면에 저희 회사 한 간부가 여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 기사에서 사진 속의 간부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바로 그 간부라고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 어디에도 위 사진과 해당 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 역시 없습니다.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하여 사진에 나온 해당 간부는 몹시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관해 사진에 나온 해당 간부가 자신은 성추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칠 수는 없을까요?

답

당연한 말이지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이나 정기간행물에서 「반론의 대상이 될 그 어떤 사실 보도를 했음」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원 보도에서 보도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요구한다든지, 원 보도를 왜곡 해석하여 원 보도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의 반론보도를 청구한다면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여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

이 사안에서도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원 보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입니다. 귀하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원문 기사의 내용을 사진 속의 한 간부가 불미스런 성추행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간부는 성추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의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 기사의 해석상 도저히 사진 속의 한 간부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 보도의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냐 하는 해석의 문제가 다시 대두 됩니다. 아무래도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원문 기사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언론사는 자신의 보도가 하등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2. 8. 14. 선고 2001나65160 판결)

물론, 위 내용은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의 판시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판시입니다. 그러나 원문 보도를 해석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므로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원문 기사 자체의 내용 및 전체적인 흐름 외에도 일반 독자가 원문 기사에서 받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진 속에 나온 간부가 보도에서 언급된 성추행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 2 절 반론보도청구의 대상

□ 특정 교단을 ‘이단’이라고 보도한 것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문 저는 ‘대한○○교○○교회’에서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4년 □월 □일자 ◇◇일보 ‘△△△△신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희 교회를 다른 교단의 이름을 빌어 이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보도에 의해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고, 위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교회 혹은 교단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만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연 이것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라 함은 ①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②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를 의미할 뿐이므로, 언론사가 특정 인물이나 종교단체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물이나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곁들여 보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만으로는 종교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 적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1409판결)

“위 ‘□□□ 집단’이라는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 교회가 신앙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 마치 불순한 집단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표현은 피신청인측이 신청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용한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지방법원 1996. 1. 8. 선고 95카5440 판결)

이 판례 역시 취지는 비슷합니다. 설령 어떤 교단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그 대상자가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련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단이라는 취지의 보도 또는 표현만 가지고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해당 보도로 인해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도 어렵다 하겠습니다.

□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희 ○○군에서는 지난 해 약 3억원을 들여 산림조성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올 해 들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새로 조성한 산림 중 1/3 이상이 고사(枯死)되고 말았습니다. 나무가 고사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지역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에서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고사의 원인이 저희 군과 시공업자 사이의 유착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보도의 형식은 ‘의혹’의 제기였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가 고사된 원인과 관련하여 ○○군과 시공업자가 서로 유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과연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보도내용의 의미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보도내용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내용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는 기사를 읽는 독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언론의 단정적인 보도나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의 보도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정정하거나 언론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가 아

니라 단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보도와의 연관성만 있으면 인정되는 형식적인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인터뷰 내용이 편집되어 진술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보도된 경우 반론 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트에서 재고상품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마트에서 중국산 나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수천만 원대의 재고품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고품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모 지역방송국 PD와 기자가 저희 마트를 방문하여 재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의 인터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재고상품 관리를 맡게 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어서 정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난 몇 년간의 재고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인터뷰에 응했고, 담당 PD와의 인터뷰는 약 40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방송 내용이었습니니다. 보도된 내용을 막상 살펴보니 40분간에 걸쳐 이루어진 저의 인터뷰는 단 5초 정도로 아주 짧게 보도되었고, 그것도 마치 제가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것처럼 방송되었습니다. 불과 5초간에 걸친 저의 인터뷰 내용은 “그것은 이전 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통과된 사항인데...”라는 것이었고, 그 직전에 기자는 “그러나 담당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하였습니다.”라고 멘트를 하였습니다. 위 방송대로라면 누가 보더라도 제가 재고물품을 횡령하고 변명이나 일삼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했던 것은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위와 같이 방송사의 편집으로 인해 저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방송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저의 본래 의도를 전달하는 취지의 반론 보도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공표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보도의 한 과정인 ‘편집(編輯)’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나 방송이든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는 기사나 방송은 없습니다. 기사나 방송은 일차적으로 취재기자나 PD 등에 의해서 취재자료가 수집됩니다. 그런 다음 기사 혹은 방송 원고가 작성되고 나면 데스크라고 불리는 각 부서의 책임자의 주관 하에 보도 내용은 가감 및 정리됩니다. 바로 이런 가감 및 정리하는 과정을 ‘편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의 과정에서는 취재된 사실 중 프로그램의 의도나 취지에 맞게 적합한 부분이 취사선택됩니다.

이런 취사선택권한이 언론사의 편집권한이고,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취사선택이라는 편집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변경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사안에서처럼 취재대상자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보도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해당 언론사의 편집권한의 행사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변경되거나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편집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편집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공표했거나 원 진술자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편집권을 가진 언론사로서는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 판결례와 조정사례(당시 중재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결례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는 200□년 □월 □일 법무부 보호국장 정△△씨가 ▽▽방송을 상대로 위 방송사가 제작, 방영한 「소리 없는 사형선고, 청송감호소」 제목의 프로그램에 관하여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청송보호감호소의 실태를 보호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을 보도한 후 연이어 곧바로 보호감호소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보호감호소가 격리로 일관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 재소자 대부분은 흉악범이 아닌 잡범이라는 내용을 방송하기까지 이르렀다면 이러한 방송 내용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은 보호감호소의 실제 운영 실태가 신청인의 위 발언과 대조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신청인의 위 발언 내용이 실제로는 모순된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넉넉히 보여지므로, 결국 신청인의 위 발언 취지를 왜

곡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은 위 발언 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발언 내용만을 방영함으로써 신청인이 주식(主食) 비율을 우선적으로 들어 피보호감호자와 교도소 수감자 사이에 주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강변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 위 발언 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식 비율 이외에 수용밀도, 접견 횟수, 서신 발신, 전화사용, 직업훈련과 학과교육의 측면에서의 각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관련 자료를 응시하면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방송의 속성상 그 부분을 편집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반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9. 선고 2003카합2180 판결)

편집의 왜곡이 문제된 조정신청사례는 2001서울중재114입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의원이 공영방송은 언론장악을 위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모 방송사에서는 9시 뉴스를 통해서 위와 같은 야당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문제의 발언을 한 야당원이 기자와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원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쓰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위 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자신의 발언이 야당의원으로서 할 수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정당의 이름으로 신청된 위 조정사건에서 인터뷰 녹취록이 제출되었는데 총 인터뷰 시간이 16분 10초나 되었고 그 내용도 언론개혁과 관련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인터뷰 초반의 수사적인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중재부가 이를 지적한 결과 해당 사건은 2차 조정기일에서 쌍방 합의가 되어 피신청인이 9시 뉴스에서 2분 이상 반론적 보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편집의 결과 원 진술자의 발언의 취지가 왜곡 보도되었다면 자신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식의 반론보도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도 귀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식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에 허위의 점은 없지만, 배경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저는 한국 한글학회의 직원입니다. 한글학회는 국민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KLPT)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뉴스에, 한국어 능력 시험문제가 한국어 시험 교재에서 대부분 출제되어 변별력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학회에서 한국어 시험 교재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출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시험 시행 초기이므로 문제를 쉽게 출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 이후부터는 제도가 정착되어 출제 경향이나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마치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가 전혀 변별력 없는 시험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보도가 가능한가요?

답 기자가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취재하고 조사한 모든 사실을 다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면상 또는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함축적으로 꼭 필요한 사실만을 추려 보도하다 보니, 그러한 사실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경, 경위가 생략됨으로 인하여, 보도 내용이 왜곡되거나, 나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도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경위 내지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반론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언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켜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 보충적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다음과 같이 보충적 반론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론보도라는 것이 보도를 접하는 일반 대중에게 원문과 이에 대한 반론을 동등하게 제공하여 대중들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히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원문 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반론보도문에서 주장하는 사실 주장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10. 30. 선고 97카합3509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한글학회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한국어 시험 교재에서 출제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 사실 자체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출제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전체적인 보도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를 한국어 시험교재에서 출제하게 된 경위, 배경 등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보충적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문, 풍문 등을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전 20대 회사원입니다. 최근 저와 교제하던 여자 친구가 저와 헤어진 후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 누리꾼들이 저에 대한 비방 글을 앞 다투어 올리고 있습니다.

전 ‘남의 말 석 달 안 간다’는 말을 믿고 그냥 참고 견디려 했는데, 최근 한 신문에 <네티즌들을 들끓게 한 “나쁜남자” 과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제가 사귀던 여자 친구를 두 번이나 임신, 유산 시키고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서 폭행을 가해 그녀를 자살에 이르게 했고, 이로 인해 제가 인터넷 상에서 많은 비방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여자 친구를 임신, 유산 시킨 적도 없고 폭행을 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녀가 자살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그렇다고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어 이에 대해 반론보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소문이나 풍문, 유언비어를 기사화 한 경우에도 제가 반론보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언론사의 보도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나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전재하는 경우, 외부인사의 기고문이나 독자투고를 보도하는 경우, 검찰·경찰의 발표내용이나 검사·경찰의 의견을 기사화 하는 경우, 다른 기관의 공문에 기초해 보도하는 경우, 타인의 발언 내용·정부의 브리핑 자료·타인의 발표내용을 기사화 하는 경우, 그리고 소문이나 풍문·여론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등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거나 여론을 인용한 보도의 경우입니다.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언론기관인 동아일보가 지득하여 이를 신문지상에 공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신청인이 지역 감정을 나타내는 문제된 소위 <씩쓸이 발언>을 하였으며 이것이 김용태 의원의 위 발언들과 같은 취지라는 내용인 이상 이 사건 기사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반론보도청구 사건에 있어서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보도내용의 의미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보도내용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의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내용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제3자의 발언 내용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는 언론보도에 있어서 타인의 말을 인용하거나 의혹을 제기, 소문을 보도한 경우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따옴표 처리로 보도하는 경우나, 인터뷰를 기사화 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기사화 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들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신청인이 옛 여자 친구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 3 절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

□ 반론보도 거부사유로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

문 저희 방송사는 최근 한 단체로부터 반론보도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그 정정의 내용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저희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면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허위 주장이라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서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반론보도청구권이 해당 보도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저 보도와 피해자간에 개별적 연관성만 있으면 인정되는 형식적인 권리라는 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청구권자는 해당 보도가 자신에 대한 보도라는 점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할 뿐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대상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2. 7. 12. 선고 2002카기3718 판결)

그러므로,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에서 비록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해야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란 매우 협소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公知)의 사실’이거나 특별한 조사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에 국한 시켜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이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 판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인이 ○○○게이트와 관련해 신청인의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의 형사 최종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통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또한 신청인이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민사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청인이 반론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론보도청구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반론보도내용은 그 반론보도내용에서 부인한 위 각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민사확정판결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들 반론보도내용들은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반론보도내용은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실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몰랐을 수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판결)

위 대법원 2004다50747 파기환송 판결 후에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노조가 경향신문 등 7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 언론사들은 대통령의 위 공사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발언을 보도하며, 대통령이 국가의 통신망을 관장하는 위 공사가 파업을 하게 되면 국가의 통신망 마비로 일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 공사 노조가 자신들은 국가의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폭처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노조의 활동이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서울지방법원 1995. 9. 30. 선고 95카기3525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해당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는 정도만으로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정도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확정판결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 혹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불합리한 정도가 되어야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2 장

반론보도청구의 이행방법

-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서 ‘기고’나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문 모 일간지에 저희 회사와 관련된 기사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 홍보팀에서 해당 신문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정정보도문 내지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신문사에서는 기고나 독자투고 형식으로만 보도문을 내줄 수 있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형식으로는 보도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기고’나 ‘독자투고’ 형식의 보도를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라고 할 수 있나요?

답 ‘기고’나 ‘독자투고’ 형식의 보도를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정보도는 그 개념상 해당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잘못된 보도를 낸 언론사 스스로 자신의 보도를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고나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보도를 내게 되면 이런 정정보도의 의미는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형식의 보도를 가리켜서 정정보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반론보도는 보도의 잘잘못과는 상관이 없고, 그저 피해자의 반박을 언론사가 지면등을 제공하여 보도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고나 독자투고 형식의 보도는 그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반론보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15조제6항은 정정보도의 적정한 보도 방법을 규정하면서, 반론보도청구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론보도를 독자투고나 기고의 형식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언론사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반론보도를 독자투고 형식으로만 받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수용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독자투고’나 ‘기고’의 형식으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은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며 반론보도 전후로 반론보도가 진실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보도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희 방송사에서는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청인측의 주장과 같은 반론보도를 이달 말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직권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도과되었고, 이제 반론보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제보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만 들어왔어도 저희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조정결정을 다투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여지책으로나마 직권조정결정 내용대로 반론보도를 이행하되 그 전이나 후로 반론보도와는 반대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여 보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답 반론보도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무기대등의 원칙’입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와 목적이 원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반론 내지 반박의 기회를 줌으로써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적용되는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규정에도 이러한 무기대등의 원칙을 정정보도청구에 규정하면서, 반론보도청구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 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일 귀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식의 방송이 허용된다면 이와 같이 무기대등의 원칙을 살리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무너질 것이며, 반론보도라는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지만 해석상 당연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판례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판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 반론보도의 방송에 앞서 반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판결주문이나 반론보도문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으로서 법원이 명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신청인의 반론이 허위 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거나, 비난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적합한 반론보도라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피신청인의 사전 방송은 당연히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게 하면서 굳이 그와 같은 사전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은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결론적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식의 방송은 반론보도의 성격상 당연히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 3 장 추후보도청구

제 1 절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

□ 추후보도청구권의 개념, 추후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차이점

문 추후보도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추후보도청구가 반론보도청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 추후보도청구는 범죄보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로서 ‘특수한 형태의 반론보도청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의 특이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에서의 논의가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추후보도청구의 특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후보도청구권이란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언론사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추후보도청구는 범죄보도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범죄 보도 역시 일종의 사실적 주장이기 때문에 추후보도청구를 가리켜 특수한 형태의 반론보도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론보도청구권은 해당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지만, 추후보도청구권은 해당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에 더하여 반드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을 살펴보면 반론보도청구는 보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보도청구는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그 밖에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반론보도청구와 같이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익과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가 이미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보도하였다면 피해자가 추후보도를 청구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2 절 추후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절차

1. 요건

□ 보도된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추후보도 청구의 방법

문 저는 예술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월경 저는 관할 경찰서의 갑작스런 출두명령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받은 혐의 내용은 국가적 행사였던 ‘◇◇◇’대회 당시, 제가 정부지원금으로 □□뮤지컬을 제작, 공연한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그 날, 다수의 방송과 신문들은 저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심지어 경찰서에 출두하는 저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해 무혐의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 전 신문과 방송의 보도로 인해 이미 세인들로부터 부도덕한 예술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조금이라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로서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범죄의 혐의**」라 함은 형법 기타 특별법이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의미하고, 「**형사상의 조치**」라 함은 범죄의 혐의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이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 등 일체의 수사 및 형사절차상의 공권력 작용이 포함됩니다. 또,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는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

를 의미하며, 따라서 법원의 공소기각, 면소 등과 검사의 기소중지, 공소권없음 결정 등과 같이 형식적인 판단으로 인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달리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귀하는 귀하에 대한 혐의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통지받음으로써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으므로 귀하의 혐의를 보도한 각 신문사나 방송사를 상대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혐의처분통지서를 받은 오늘로부터 앞으로 3월이므로, 위 기간 내에 서면으로 각 신문사의 발행지 내지 방송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행사기간

□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문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로 종결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로 종결되는 경우는 몹시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경우(형사소송법 제 358조, 제374조) : 상소기간의 마지막 날
-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포기, 취하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49조) : 상소 포기 또는 상소 취하일
-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4항) : 상고기각판결 선고일
-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깨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96조) : 무죄판결 선고일

위 각 경우들과 같이 형사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짜는 다 다르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입니다. 형사 절차가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혐의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46조). 그래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는 피의자에게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등 사건에 적합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등은 모두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또한, ‘공소권없음’은 기소에 필요한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내리는 형식적 처분으로서 혐의의 유무와는 무관한 형태의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는 처분 유형은 ‘혐의없음’ 및 ‘죄가안됨’ 뿐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 또는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LUS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결정 중 어느 하나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 공소제기
- 불기소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및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죄가안됨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소권없음 : 피의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친고죄 등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등
 - 각하 : 고소인 등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고소사실에 대해서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내리는 잠정적인 처분
- 참고인중지 : 참고인·고소인·고발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내리는 잠정적인 처분
- 공소보류 :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경우에 내리는 처분
- 이송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가정보호사건 송치

제 3 편

언론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제 1 장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제 2 장

위법성조각사유

제 3 장

범죄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

제 1 절 보호법의

1. 명예권

□ 명예와 명예훼손의 개념에 대하여

문 저는 A라는 월간지의 발행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월간지와 경쟁관계에 있는 B월간지 11월호에서 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인 즉, ‘A의 발행인 N씨는 잡지 편집에 문외한이다. 2년 정도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잡지사를 운영하기엔 역부족이다. 최근 A잡지 부록으로 발간한 책자 역시 경쟁지가 발간하려고 준비하다가 무산된 것을 베껴 만든 것이다.’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기사에 의해서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와 같은 기사를 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

답 해당 기사가 귀하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판적’이라는 것을 넘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해야 하고, 따라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로 명예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란 그 누군가에 대한 사회의 평가이므로, 명예 주체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나 느낌(소위 말하는 ‘명예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법에서 말하는 ‘명예’가 결코 아닙니다.

한편, 누군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명예훼손을 구성하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진실을 보도해도 명예훼손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방법에는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특히,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의해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에 유의하면서 이 사안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기사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부분도 있고, 추상적인 판단 내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귀하를 가리켜 잡지 편집에 문외한(門外漢)이라고 한 것과 잡지사를 운영하기에 역부족(力不足)이라고 한 것은 의견 내지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년 정도 (잡지 편집에 대해) 어깨너머로 배웠다거나 다른 잡지사의 것을 베껴서 부록을 만들었다고 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부분 모두 월간지의 발행인으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위험이 다분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적인 위 기사의 두 부분 모두가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표현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의 표현 정도로는 표현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아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기사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 기사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해당 기사를 보도한 잡지사의 책임이 면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의 기사 내용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의 내용이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잡지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고,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표현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2. 초상권

□ 동의 없는 사진게재행위와 초상권침해 여부

문 저는 현재 모 은행 전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A사의 프린터 기기와 관련하여 모 잡지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대상으로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나온 해당 잡지사 소속 기자와 프린터 사용 소감 등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였고 별 문제없이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직장 동료로부터 지하철에서 배포되는 어느 무가지(無價紙)에 저의 사진과 이름, 직장명과 직위, 그리고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인터뷰한 기자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무가지의 해당 기사 말미에 붙어있는 기자의 이름은 생소하였습니다. 위 기사가 나간 이후 저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터뷰 비용은 얼마나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가지를 발행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구제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 손해배상 성립여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가지에 실린 해당 기사는 몇 가지 면에서 귀하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귀하의 사진을 실었다는 점에서는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고, 귀하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성명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직장명과 직위 역시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또 다른 인격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인터뷰에 응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초상이나 성명 등 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귀하가 초상이나 성명 등 인격권 사용을 허락한 상대방은 무가지 기자가 아니라 잡지사 소속 기자였으므로 해당 잡지사 외의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는 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귀하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발행하는 무가지에 사진을 싣고 성명과 직장명, 직위 등을 공표한 해당 신문사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신문사는 귀하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다음으로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가 해당 무가지 기자와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위 기사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이와 같은 이유로 위 기사에 대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은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의 행사)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청구권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경우”등이 있습니다(86다카818, 97다28803).

그러므로 이 사안의 관건은 해당 기자가 귀하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원문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인지 아니면 지엽말단적인 사항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원하는 대로 반론보도(‘귀하는 해당 기자와 면담한 일조차 없으며 해당 기사는 기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의 반론보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귀하의 명예 회복이나 입장 해명에 도움이 된다면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모 여성지에 실린 육필수기가 사실은 해당 잡지사 소속 기자에 의해서 임의로 창작된 것이었던 경우 법원은 잡지사에게 ‘신청인은 해당 기자와 면담한 일조차 없으며 해당 수기는 기자가 임의로 창작한 것이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명한 바 있습니다(86카28755, 86나4096).

□ 취미생활로서의 사진촬영에도 당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문 저의 취미는 ‘사진 촬영’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저는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 나갔다가 좀 인상적인 장면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한 쌍의 젊은 부부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며 유모차를 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후 사진을 인화해보니 사진이 마음에도 들고 잘 나와서 ○○일보 ‘디카’ 코너에 제보하였는데 제 사진이 뽐혀 위 신문 주말판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승낙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쁜 장면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도 아니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답 인격권의 일종인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97가합8022, 97나43156).

따라서 귀하는 초상권자인 당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사진을 찍었으며, 나아가 그것이 공표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당사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

물론, 판례 중에는 초상권 침해가 명예훼손에 포함되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마치 초상권은 명예권과는 별도로 인정될만한 독자성이 없는 권리인 듯한 인상을 주는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초상사진의 경우 초상 본인은 당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즉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할 수 없고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진을 공표할 수 없는 권리를 보유한다 할 것이다. … 여성○○의 사진무단게재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과 아울러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0. 5. 4. 선고 89나36528 판결)

그러나 위 판례를 두고 초상권의 독자적 권리성을 부인한 판례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택라고 여겨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액이지 불법행위가 몇 개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판례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초상권은 독자성 있는 권리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상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어도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가령,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이 모델로 쓰인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같은 인물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된다고 보는 경우(95카합3438)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교형량 원칙’에 따라 초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익과 초상권을 공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에 공익이 사익을 초월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특별히 고려할 만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을 촬영한 행위는 귀하의 취미생활이었고, 그 사진을 신문에 제보한 것도 특별한 공적 목적이나 공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행위는 당사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당사자의 추가적인 승낙 없이 당사자의 초상 및 사생활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문 저는 몇 해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어렵게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 방송사에서 저의 이런 사연을 알고서 방송 출연을 의뢰하여 결국 저의 사연을 담은 1시간 분량의 방송 프로그램

이 제작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저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보험설계사가 저를 찾아와 보험 내용을 설명하는데, 참고하라며 보여준 동영상에 바로 제가 출연했던 바로 그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바로 저라는 사실도 모른 채, 이 여인처럼 불행하게 되지 않으려면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초상 및 사생활이 그대로 녹아있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험 설계사들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해당 방송사가 저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방송사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요?

답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점은 귀하가 방송 출연을 승낙하면서 과연 어느 행위까지 승낙을 하였느냐 하는 ‘승낙의 범위’입니다. 만일, 귀하가 방송 출연시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방송이 녹화되어 영리 목적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에 동의하였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방송사의 행위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방송 출연 시에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하는 초상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방송사측에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 내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이 두 가지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 권리의 충돌이 아닙니다. 다음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민법 제75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할 때 모든 국민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하며,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촬영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본인이 동의하고 또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공표, 복제, 판매되는 등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 소속 기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 및 인터뷰 요청을 받고서 이에 동의하였고 그 촬영이 공중과 방송을 통한 초상 공표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촬영된 원고의 초상을 공중과 방송을 통하여 방영하는 것은 원고의 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회관 등에 판매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따로 얻지 않았는데, 이것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살피건대, 위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된 이후의 복제, 판매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방영 등 여부가 위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방송사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는 방송사로부터 그 저작권을 위임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저작권 행사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위법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 복제, 판매행위가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공중과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촬영 및 인터뷰 요청에 동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동의는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에 대한 동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먼저 복제의 경우에 관하여 살피건대, 촬영 또는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보존 등을 위하여 이를 비디오테이프 등의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자체는 원고의 위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한 복제 내지 실제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지 사적 또는 가정용 이용을 위한 시청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원본 그대로 복제, 판매하는 것은 제작,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원고의 위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위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단지 공중과 방송을 통한 일회성 방영에 동의하였을 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영리 목적의 복제, 판매나 반복적 방영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일단 반복적으로 방영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곳에 제공할 경우에는 위 촬영동의 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원고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복제, 판매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0. 7. 4. 선고 99나 83698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만일 방송사가 초상권 등의 인격권자인 방송출연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영리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면 이는 출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위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방송사에게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다는 것과

그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느냐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작자이자 저작권자인 방송사가 만일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방송 출연자로부터 그에 대한 부분까지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라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상대방 방송사가 귀하가 출연했던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한 후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 행위는 영리 목적의 복제 및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이러한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방송사의 행위에 대해 귀하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 공적인 인물의 경우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한 초상권 공표를 감수해야 하는지 여부

문 저는 몇 해 전 여대생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으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평범한 여자의 신분으로 돌아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 방송에서 제 결혼식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가지고서 <최근 결혼식에서 호화 웨딩드레스가 유행한다>는 TV뉴스보도의 자료화면으로서 약 13초 가량 방영하였습니다.

저는 제 결혼식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결혼식 사진이 보도된데 대해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보도한 방송국에 문의하니 저는 시사적인 의미를 갖는 공인이며, 따라서 저의 초상권은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공인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제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진까지 저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인이라 하여 이런 경우까지 제 초상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 사안에서는 신청인이 공인에 해당하는지, 또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초상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신청인이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겠습니다. 판례는 이른바 공적 인물 또는 시사적 인물의 경우 그들에 대한 일반 공중의 관심을 고려할 때 그들의 초상권은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모 대기업 총수의 평전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발간하고 그 표지와 광고에 얼굴 사진을 게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서울지방법원 1995. 9. 27. 선고 95카합3438 결정)

판례에 의하면 공인의 경우 초상권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되므로 어느 경우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공인의 의미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없는데 다만 판례가 공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명한 친북 재미 언론인
- 강원도의회 의원
- 중견언론인 (TV 뉴스 앵커를 지낸 방송사의 보도국 차장)
-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 지방자치단체장 (군수)
- 정치인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대변인)
-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 PD
- 야구선수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소속의 한국인 야구선수)
- 여대생 시절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하여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
- 대기업 회장

한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미스코리아 대회에 뉴욕 진으로 참가한 적이 있는 유명 가수의 여자친구
- 사인(私人)이 범죄 혐의의 피의자가 된 경우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사망한 장교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자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 시사적 인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인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일반 공중의 관심을 고려할 때 귀하의 초상권은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이라 하여 그 초상권이 무한정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와 연관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1. 24. 선고 95가합13495 판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시사적 의미를 갖는 공인이라 하겠지만, <최근 결혼식에서 호화 웨딩드레스가 유행한다>는 뉴스보도는 귀하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도라 하겠습니다. 귀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더욱이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귀하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3. 성명권

□ 발주하지도 않은 축하광고를 낸 신문사의 책임 여부

문 저는 ○○군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저희 군내 지역 일간지인 ‘◇◇군민신문’이 창간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자 위 신문을 살펴보니 제가 발주하지도 않은 축하광고가 저의 이름으로 버젓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광고를 발주하지는 않았어도 축하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닌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저는 해당 신문사측에 축하메시지를 전한 바도 없습니다.

물론, 해당 광고의 내용은 “◇◇군민신문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이었고, 저의 직위와 이름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었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세한 지방지들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식의 편법을 이용하

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인인 저로서는 제가 낸 일이 없는 광고가 저의 이름으로 나간 것에 대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식의 광고가 정당한 것인가요?

답 귀하의 경우는 인격권의 일종인 ‘성명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명권이라 함은 성명권의 주체가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명을 자신의 성명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만 아니라 타인의 성명을 간판 등에 선전 목적이나 상품의 표시로서 남용하는 행위도 성명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현재 실무상 성명권이 명예훼손의 내용 속에 융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독립하여 이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름을 잘못 인용하여 인격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극 배우 윤모씨가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벤트 회사에 1,0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벤트 회사가 배우 윤모씨와 섭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출연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은 성명권의 침해”(서울지방법원 1996. 5. 16. 선고 판결)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비록 해당 광고의 내용이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의 직위와 성명을 이용, 광고를 낸 것은 성명권의 침해로 보이고, 따라서 해당 신문사의 행위 역시 정당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4. 사생활의 비밀

□ 사생활의 공표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문 저는 모 방송국 아나운서입니다. 공채 시험에 합격한지 5개월 만에 메인 뉴스의 앵커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제가 너무 빨리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된 것에 대해 뭔가 배후

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인이라면 공인이므로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참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모 월간지에 제가 국내 굴지의 모 그룹 총수와 내연의 관계이며, 그 총수의 재력을 등에 업고 앵커가 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뉴스 앵커라는 저의 신분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제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감수해야만 하는 것 인지요?

답 공적 인물, 즉 공인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적 인물이란 그 재능, 명성, 생활 양식 또는 일반인이 그 행위·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직업을 가진 자이며, 이러한 인물에 대한 일반인의 알권리 또한 보장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인이라 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무한정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승낙을 받아야 하며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는 위법입니다.

여기서 어떤 경우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며 어떤 경우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체로 공공의 정당한 정보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등산을 다녀왔다는 보도, 연예인이 결혼을 했다는 보도 등은 공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배우가 그룹 총수와 동거를 한다는 기사, 연예인의 자녀가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소문을 기사화 한 경우는 공적 관심사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유명 방송인이 이혼 배경 보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보욕구 또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사인에 비하여 폭넓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가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공인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나, 남녀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서울지방법원 2001. 5. 31. 선고 2000나11081 판결)

귀하의 경우, 공중과 방송 메인 뉴스의 앵커라는 지위는 공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인 귀하도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사적 영역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재벌 총수와 내연의 관계라는 보도내용은 공적 관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사생활의 공포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음성권

□ 신청인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여 방영한 경우

문 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직원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방송사의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회사 방침상 회사 입장에 대해 직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인터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커피나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여, 사적인 대화를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방송사의 뉴스를 보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날 제가 기자와 나누었던 사담 중 회사에 관해 몇 마디 했던 부분이 마치 제가 기자와 인터뷰를 나눈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되어 방영되었습니다. 비록 저의 얼굴이 아닌 다리를 비추고 있었으나 분명 몰래카메라로 대화내용을 촬영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분개하여 기자에게 항의하였더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나감으로써, 본의 아니게 회사 방침을 어기고 인터뷰한 사람으로

몰려 회사에서도 매우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음성을 비밀 녹음, 청취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위 규정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녹음자가 대화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기자 본인이 대화자로서 귀하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므로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방영한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성을 비밀 녹음하거나 타인의 음성을 동의 받지 아니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내보내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고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원고의 촬영 거부 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원고를 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촬영하여 방영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된다.”(서울고등법원 1997. 9. 3. 선고 96나82996판결)

귀하의 경우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음성을 비밀 녹음하여, 귀하를 아는 사람들이 충분히 귀하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음성을 방영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 절 당사자

1. 주체

□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어제 TV에 한 달 전쯤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에 대한 방송이 나왔는데,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열거된 사실 중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해당 프로의 제작팀은 저희 유족 중 어느 누구에게도 아버님에 대한 사실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해 돌아가신 아버님뿐만 아니라 저희 유족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해서 저희가 해당 방송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언론중재법은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유족이 그 구제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 존속이, 직계 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현행법상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전에도 죽은 사람이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근거를 놓고 학설들이 견해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무상으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유족 등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해결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죽은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를 아는 사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죽은 사람에 대한 보도가 있었을 때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고와 그 보도를 연관시키고, 언론사가 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주장,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미 사망한 망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들의 사회적 평가와 더불어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망인들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이 침해되어 원고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원고들은 망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직접 원고 자신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69303판결)

새로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사망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유족이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귀하는 해당 보도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와 죽은 사람의 유족들의 명예, 나아가 유족들의 죽은 아버님에 대한 명예감정 및 추모감정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PLUS

법적으로 ‘명예’와 ‘명예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즉, ‘명예’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객관적 평가를 의미하지만, ‘명예감정’은 명예 주체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라고 불리기도 하는 반면, 명예감정은 이와 대조되는 뜻에서 ‘내부적 명예’라고 불립니다.

주의할 것은 어떤 보도가 ‘명예감정’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만으로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기관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문 2008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 방송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대상자들을 취재, 보도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당사자가 되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송행위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 엄정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소권으로 보는 정정,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 반론보도청구권의 근거 규정인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반드시 권리능력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공법인으로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권리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 역시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라는 것이 꼭 권리능력에 인정되는 주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 또는 단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기관은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항구적인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관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같은 행정 각부, 국립대학 내의 각 단과대학, 국회 및 법원과 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하부 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가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정정보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 제4항과 같은 특수한 조항, 즉 권리의 주체를 확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사람이든지, 법인이든지, 최소한 법인과 실질에 있어서는 같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법인격이 없는, 다만 국가라는 법인의 기관일 뿐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보건복지부가 동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보도는 보건복지부가, 손해배상신청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객체

□ 반론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상대방'

문 일간지에 게재된 개인의 기고문이 특정인 A에 대한 사실을 호도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 반론보도청구권의 근거 규정인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뉴스사’, ‘주식회사 □□신문사’ 등과 같은 「신문사」 및 「통신사」 또는 ‘주식회사 ○○방송’, ‘한국△△공사’ 등과 같은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의 언론사 및 방송사업자는 각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법인 혹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언론사의 대표나 발행인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보도가 일간지에 게재된 개인의 기고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사실적 주장이 담겨 있는 한 편집 형식이나 공표 방법 등 보도 형태와 상관없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사 외부인의 기고문이라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는 원고(原稿)를 수정, 삭제할 편집권한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간지에 게재된 개인의 기고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원고 작성자인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당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에 대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의 문제는 언론중재법상의 손해배상청구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를 구별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규정이 언론중재법과 민법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언론중재법은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를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언론사가 아닌 기자, 편집인, 발행인 등을 상대로는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언론사에 한정되지 않으며 잘못된 언론보도라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의 규정까지 고려한다면 명예를 훼손하는 해당 기사에 관여된 자는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언론중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아니라, 기사 작성 및 보도에 관여한 자 즉, 기자·편집인·발행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750조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간지에 게재된 개인의 기고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든 오직 신문사를 상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문사를 상대로만 가능하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문사뿐만 아니라 원고 작성자인 ‘기고자’, 편집 및 보도에 관여한 ‘편집인’, ‘발행인’등을 상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3 절 피해자의 특정

□ 이니셜 표기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서울특별시 ○○구에 위치하고 있는 ‘사◇◇ 산후조리원’의 원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구에 위치한 ‘신□□ 산후조리원’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신문과 방송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문제는 위 사건을 보도한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해당 산후조리원을 ‘○○구에 있는 S산후조리원’이라고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 산후조리원이 저희 ‘사◇◇ 산후조리원’과 ‘신□□ 산후조리원’ 딱 두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 보도를 본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산후조리원을 저희 ‘사◇◇ 산후조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언론의 부주의한 이니셜 표기로 인해 해당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희들이 피해를 볼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신문사나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어떤 보도 행위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기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두문자나 이니셜만 표시한 경우, 약칭이나 애칭, 가명을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2000다50213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65338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꼭 성명이나 명칭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보도의 내용을 주위의 사정과 종합하여 그 독자나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문제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을 이니셜로 처리하면서 서까지 보도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보도로 인해서 선의의 제3자가 의심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보도들이 ‘○○구에 있는 S산후조리원’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표시는 ○○구에 위치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중 이니셜이 S인 모든 산후조리원을 지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산후조리원이 숫자가 적고, 지칭된 산후조리원과 다른 산후조리원을 구별할 아무런 단서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결국 구성원 전부에 대한 진실의 증거가 없는 한 면책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례를 열거합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아울러 직업, 학력, 지연, 출신 등에서 유래하는 공통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명예훼손 사실이 보도된 경우 그 보도로 인하여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수(집단의 크기), 그 집단을 다른 집단이나 단체와 구별하게 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공통 요소,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기무사 현역 장성은 모두 8명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위 보도에서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들’이라고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시작 부분에서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데 이어 A, B, C라는 이니셜을 사용하여 기무사 현역 장성 가운데 3~4명이 병무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이 소속된 ‘기무사 현역 장성’이라는 집단의 소규모성, 직업과 직위를 특정하여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 보도에서 지정한 병무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원고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보도로 원고들 개개인의 명예가 모두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주체는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전 취지나 주위의 사정상 특정인을 추지(推知)할 수 있으면 족하고, 특히 잡지의 배포에 의한 사실적시라는 방법이 취하여진 때에는 그 독자 전원이 명예가 훼손된 특정인이 누구인가를 알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있어서 그 사실의 표현 전체나 특정인에 대한 예비 지식을 종합해서 적시된 사실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를 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서울대학교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이고 특히 원고 오○나, 원고 이◇영은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인 점, 서울대학교 사회대에는 86학번 여학생들이 49명의 소수인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모델이 원고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 (이 사건 기사의 모델을 추지할 수 있는 요소로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 ‘특례 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여학생’ 등이 있는데, 비록 원고들이 특례 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학생은 아닐지라도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 중에는 위와 같은 특례 재입학과 휴학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아 이러한 요소는 원고들 주변사람들이 모델을 추지하는 데 거의 쓸모가 없는 요소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 중 모델을 추지할 만한 요소로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는 요소와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라는 요소라 할 것이다)이고,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배치와 내용,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가 보도 공표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위 ‘필’지에 이를 게재하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피고 및 위 ‘필’지의 편집진들인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

결국, 이 사건에서 해당 보도들은 ○○구에 있는 산후조리원 중 S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할 것이고, 각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공공성, 진실성이나 상당성)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4 절 사실의 적시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 ‘삼류악단이다’, ‘형편없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을 구성한지 여부

문 저는 ○○시립교향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연주자입니다. 저희 교향악단에서 는 이번 여름에 여름방학을 맞이한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걸쳐서 ‘청소년을 위한 고전음악 감상’이라는 음악회를 야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모 지역 신문이 위 공연에 대해 보도하면서 ‘연주가 형편이 없다’, ‘삼류악단이다’는 악의적인 표현을 기사에서 거침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공연 당시 장소가 야외였고, 또 참석자들이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어서 분위기가 산만한 점은 없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혹평을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악단의 자질에 관해서는 ‘삼류’라는 혹평을 들을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악단은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해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당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기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판적인 견해의 표명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명예훼손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해당 기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기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 표현의 문언(그는 분명 주사파이다)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서울지방법원 1995. 12. 22. 선고 94가합17753 판결)

“언론매체의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서울지방법원 2002. 12. 6. 선고 2002가합13985 판결)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2. 8. 14. 선고 2001나65160 판결)

위 판례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안에서의 기사가 명예훼손적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삼류이다’, ‘형편없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지휘의 ‘▽▽▽ 왈츠 오케스트라’에 대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연주하는 이삼류 실내악단」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보전대, ‘▽▽▽ 왈츠 오케스트라’에 대하여 「이삼류 실내악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위 오케스트라의 수준에 대한 평가적 의견에 불과하고, 위 오케스트라가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는 표현 또한 위 평가의 전제로서 위 오케스트라의 연주관객층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삼류」라는 평가에 부수한 표현으로서 전체로서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2003. 1. 10. 선고 2001가합38642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 문제된 기사의 표현 정도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 허용될 수 있는 비판적 견해의 수위는 어디까지인지

문 저는 기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만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비판적 견해, 감정의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적 견해, 감정의 표현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과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비판적 견해, 감정의 표현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요? 허용될 수 있는 비판적 견해나 감정의 표현은 어디까지인지요?

답 일단,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에는 아주 폭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의견의 표명 또는 논평에 있어서 그 표현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 전제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한 다음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적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7. 선고 2007가합33984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7. 선고 2006가합98182판결)

다음으로, 표현의 방법이나 정도가 표현의 한계를 초과하여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멸적인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이 도가 지나쳐서 ‘인신공격’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들입니다.

“원고의 잘못의 정도와 판결에 대한 영향을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른 표현으로서 그러한 의견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나26206 판결)

이와 같이 표현의 정도가 지나쳐서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성을 인정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주사파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2003나6240) ▶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집니다.” (2003나26206)	▶ “반민주적·반민족적·반통일적 언론행위”, “일제의 주구 노릇”,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 편에서 보도”(2002가합47094) ▶ “그냥 웃기는군”, “그런데 자꾸 보다보니 짜증이 났다.” (2000가합7745) ▶ “우○○ 기자에게서는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느껴진다.”, “어떤 살의마저도 느껴진다.” (2001나66484) ▶ “관광객을 상대로 연주하는 이삼류 실내악단” (2001가합38642)

결론적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고,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2. 사실 적시의 형태

□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재(轉載)하여 보도한 신문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문 저는 특수일간지라고 할 수 있는 ○○○○신문 기자입니다. 저희 신문에 게재되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물론 저희 신문사에 소속된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여 편집한 것들입니다만, ‘특수일간지’라는 성격상 게재되는 모든 기사를 소속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사가 국내의 유력한 뉴스통신사와 전채계약을 맺고 해당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만약 저희가 전재하여 실은 기사가 진실과 다르다거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히 훼손하는 것이라면 저희 신문사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답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때 그 사실을 직접적으

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만 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적시의 형태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사가 자사에 소속된 기자에 의해서 직접 작성된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나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든지 일단 해당 언론사의 지면을 통해서 공표되었다면 이로써 해당 기사의 보도 주체는 공표한 신문사가 될 것이고 공표된 기사로 인한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재기사의 보도와 관련해서 보도의 주체인 언론사에게 무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즉, 전재기사의 보도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해주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구체적으로 뉴스통신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이지만, 제공받은 기사에 크레디트나 그 전재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또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상당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 중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다음에서 소개합니다.

“피고는 문제가 된 이 사건 기사는 소외 주식회사 △△통신으로부터 송고 받아 피고가 기사화한 것인데, △△통신은 국내 대부분의 일간지들과 송수신 및전재계약을 맺고 각 신문사에 기사를 송고해 주는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통신사이며, 각 신문사가△△통신으로부터 송고 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일반 관행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일반적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나,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볼 때 신문사가 통신사와 통신 송수신 및전재계약을 맺고 그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면서도 그전재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다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6. 9. 18. 선고 95나41965 판결)

물론, 위 판결의 취지는 전재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재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자사의기사와 똑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 내용을 반대로 해석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만일 전재기사임이 명시되었다라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가능성이지 아직 판례가 전재기사의 경우에 면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현재 언론보도의 관행상 다른 언론사의 기사 보도, 뉴스통신사 뉴스통신문의 보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력 중앙일간지의 경우에도 국외의 일부 소식에 대해서는 외국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신문과 같은 특수일간지의 경우에도 사회면을 포함한 모든 지면을 자사에 소속된 기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기사만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전재계약에 따른 타사 기사의 보도가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에서 전재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사의 기사와 동일한 정도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재하여 보도했다고 해서 전재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보도의 주체인 해당 신문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제 5 절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

1. 인과관계

-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얼마 전까지 저는 제 딸의 해외유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저는 ○○일보에 실린 ‘◇◇◇◇아카데미’라는 ‘유학대안(代案)학교’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고, 저는 아직 나이 어린 딸을 멀리 해외에 유학시키는 것보다는 대안학교에 입학시키는 편이 낫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입학 후 해당 학교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현실은 기사의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설은 엉망이었고, 교사들도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문제의 기사를 쓴 기자는 아마도 학교 측이 제공한 보도 자료만을 토대로 기사를 쓴 듯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학교를 방문해봤다면 도저히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일보라고 하면 공신력이 있는 중앙일간지로 알고 있어서 기사에 실린 내용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엉터리 기사를 신문의 지명도만 보고 믿은 저 같은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저는 기사를 쓰면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기자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저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 언론중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또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즉 귀책사유가 있느냐’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일 것입니다.

귀책사유의 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도 그것을 원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이라 함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취재하지 않고 상대방측이 제공하는 자료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생

각됩니다. 통상 기사를 쓰는 기자에게는 현장에 가서 사실 관계를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오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안에서 취재의무를 다하지 않은 해당 기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자의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에서는 계약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우리 법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따라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만으로 배상범위를 판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을 판시이유에서 명시하기도 합니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므로, 판사의 예견가능성의 존부판단에 따라 배상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추상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인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98다2631 판결) :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만으로 배상범위를 판정한 예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채무불이행당시의 교환가격이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028 판결) :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 예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서 제외된 예

하지만 이 사안에서 과연 이 사건 보도와 귀하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선, 사회통념상 자녀의 입학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사정을 확인해보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귀하의 자녀를 해당 학교에 입학시킨 결과에 대한 원인이 오직 이 사건 보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만일 이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해당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로지 신문사에 지우는 꼴이 되고 이는 결코 공평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 기사가 홍보성 기사임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기사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종류의 기사보다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사를 무조건 믿은 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단지 기사에 실린 내용만을 믿고 그 이상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없이 자녀를 입학시켰다고 한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잘못된 보도를 낸 언론사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당사자 자신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의 공적인 기능에 비추어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직무상 의무의 정도로 기자의 사회적 책임 내지 의무를 높인다고 하면 기자의 과실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엄청나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해당 신문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있어야 할 것이지만, 단지 중앙일간지에 실린 기사라서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당성 있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의 발생 등 기타 요건

□ 회사에 대한 오보와 주가 하락의 상관관계

문 저는 일반경제지의 일종인 200○년 ○월 ○일자 ◇◇◇◇신문에 난 모 건설회사에 대한 기사를 보고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을 매수하고 난 다음 위 신문에 난 해당 기사가 오보였음이 밝혀졌고 그 시점을 전후하여 위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이와 아울러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 언론중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또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요건은 ‘언론사의 과실이 있느냐’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일 것입니다.

과실의 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실’이라 함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과실의 범위가 곧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의 범위와 직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주의의무의 범위가 곧 승패의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판례는 언론사의 주의의무가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행위자의 행동의 자유와 피해자의 법익보호를 비교형량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교량함에 있어서는 그 위험행위의 사회적 유용성, 그 위험행위로 야기되는 손해발생의 개연성, 손해의 정도 및 범위,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수준, 개별적인 예견가능성, 피해자의 과실, 기타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사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은 증권회사 등이고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이 사건 보도는 A건설과 B증권의 재무상황에 관한 내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증권회사 등에 이 사건 보도 기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B증권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비록 증권회사 등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내용을 다시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접한 투자자들에 의하여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보유한 B증권의 주식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01. 10. 25. 선고 2001나8495 판결)

이 판례에서는 기사 제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등을 토대로 언론사인 피고에게 보도 대상이 된 회사의 주식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유추하여 이 사안에 적용해본다면 역시 어떤 언론사에 보도 대상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판례에는 반대 해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일반경제지와 같이 기사 제공의 상대방이 증권회사가 아니라 일반인이고,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주식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영업실적, 발전가능성, 경영상의 전망 등에 대한 것이라면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제신문을 구독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실리는 기사를 주식 투자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과연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 경제신문사에 주식투자자들의 주식 가치를 보호할 주의의무까지 인정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기자의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느냐 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에서는 계약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우리 법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따라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만으로 배상범위를 판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을 판시이유에서 명시하기도 합니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므로, 판사의 예견가능성의 존부판단에 따라 배상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2001나8495판결은 오보와 주주들의 재산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사상적 기초는 무엇보다도 정당한 손실전보 및 일정한 손해위험의 공평한 분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에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가해행위가 사회에 주는 위험성의 크기, 어떤 손해를 누구에게 분배시키는 것이 손해방지에 도움이 되며 효율적인가 등을 감안한 손해배상의 경제적 공평성이라는 이념을 함께 고려대상에 넣어야 하고, 가해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의 불측의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보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건설과 B증권의 재무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위 보도내용이 직접적 대상이 아닌 B증권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주가는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영업실적과 장래의 발전가능성, 경영진의 구성 및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 기타 전반적인 경제동향을 비롯하여 주가등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모든 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 및 한편으로 앞서 본 B증권의 주가 변동상황에 의하면, B증권의 주가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이전인 위 보도 당일 11:00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가 나간 뒤 잠시 주가를 회복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그 다음날까지 소폭 등락을 계속 하면서 주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및 그 정정보도가 나간 후 원고들이 B증권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의 B증권 주가등락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는 비록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모 건설회사에 대한 보도가 오보임이 밝혀진 시점과 주가가 급락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고, 어떤 회사에 대한 오보가 나갈 경우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위 판례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해당 언론사에 오보로 인한 주가하락의 책임을 묻는 것이 손해배상의 경제적 공정성이라는 이념상 타당하다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해당 신문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언론사에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오보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1 절 공공성

□ 범죄혐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문 저는 현재 특수강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입니다. 그런데 엇그제 면회를 온 저의 가족으로부터 저에 대한 보도가 모 일간지에 실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기사가 익명으로 보도하고자 저의 이름까지는 생략했다고 하지만 성씨와 나이, 주소와 직업 등이 상세히 보도됨으로써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해당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기사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인정되는 ‘익명 보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경우 일반 국민들이 그 범인이나 혐의자의 신원에 대해서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익명 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보도는 설령 그 보도가 사실에 충실한 보도였다 하더라도 공공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하여 위법한 보도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언론 각사들이 공표한 내용은 모두가 적어도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거나,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폭력배

에게 남편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으며, 망 정○○은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 원고와 망 정○○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와 망 정○○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의 보도 역시 공인이 아닌 귀하의 인적사항까지 보도하여 일반독자들로 하여금 범죄혐의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게 한 것은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익명보도 원칙을 위반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귀하가 형사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 절 진실성 또는 상당성

□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한 기사나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의 책임 유무

문 저는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인근에서 만두를 제조, 판매하는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터진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월 평균매출액은 국가적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8,000만원에 육박하였으나, ‘쓰레기 만두’에 대한 보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로 2,000만원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희 만두를 납품받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아예 만두를 매장에 진열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현재는 거래처도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도산 직전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어제 신문과 방송에 발표된 ○○청의 불량 만두 제조업체 명단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위 명단에 저희 업체명이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업체가 불량 만두 제조업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공장을 운영해온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식품위생법위반이나 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거나 지적당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이 뭔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일 저희 업체가 불량 만두 제조업체 명단에 포함된 것이 관계 당국의 실수나 잘못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이 사안에서 일단 해당 보도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인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공신력이 큰 국가기관에서 귀하의 업체를 불량 만두 제조업체라고 발표했다는 사실은 귀하나 귀하의 업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당연히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해당 보도의 위법성입니다. 명예훼손적인 보도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적인 보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가리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릅니다. 이 위법성 조각사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명예훼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측이 해당 보도의 ‘공공성’,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입증하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언론사측은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첫 번째 요소는 「공공성」입니다. 이 「공공성」이라 함은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 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그 보도 목적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해당 보도는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며 인체에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그와 같은 위해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공공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두 번째 요소는 「진실성」입니다. 이것은 보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보도가 담당공무

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인 「상당성」이라 함은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와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소는 말하자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호해주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당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느냐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언론사는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다고 할지라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상당성 요건은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떤 경우에 허위 사실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상당성을 인정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다음에서 소개합니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할 것인바, 한편 이러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 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위 판례에서 문제된 것은 국세청이 발표한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중에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오보에 대해 법원은 국가(국세청)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위 사건에서 원고는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을 피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설령 원고가 국세청의 보도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언론사들을 피고로 삼았다 할지

라도 언론사에 대해서는 상당성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즉, 공권력에는 광범위한 사실조사능력이 있고, 국가가 공표한 사실은 진실하리라고 국민들이 강하게 기대하고 신뢰한다는 점, 또한 공무원들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이 인정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합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국가기관인 ○○청의 공식 발표 내지 보도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게는 비록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공신력이 높은 국가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언론사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므로 귀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보다 오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사적인 통로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의 경우에는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기사 제목을 ‘내연녀’로 단정 표현한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았다면 기사의 작성행위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제 3 절 그 밖의 위법성조각사유

□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경우, 그 허용 한계에 대하여

문 저는 지방신문 기자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신문’은 지방의 소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시’에 발행지를 두고 있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주간신문입니다. 이와 같은 저희 신문에 최근 ◇◇시청이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시청이 발주로 저희 신문에 낸 이 홍보 광고였습니다. 저희의 실수였는지 광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시의 영문표기와 홈페이지 주소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는 부랴부랴 정정 기사를 내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위 광고를 문제 삼으며 ◇◇시청 홍보담당부서의 책임을 묻는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언론에 민감한 공무원의 특성상 위 기사에 대한 반응은 생각보다 컸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위 기사로 인해서 해당 시청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 사건에 대해 기사를 낸 해당 신문사의 보도 의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알파벳 한 두 글자가 잘못 기재된, 그야말로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는데 위 신문사는 마치 시청(市政)에 무슨 큰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운운하였습니다. 또한, 위 신문사는 같은 지역으로서 이 전부터 저희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 기사가 언론의 무책임한 부풀리기식 기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언론사를 겨냥하여 기사를 냈습니다.

저희의 기사가 나가자 위 □□신문사측은 저희의 기사 중 ‘지역신문사의 횡포’, ‘무책임한 보도’라는 식의 표현을 문제 삼아 저희 신문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과연 저희 신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 귀하가 문의하신 사안은 소위 말하는 ‘언론사간 명예훼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구도는 ‘개인 대 언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립되는 법익 역시 ‘인격권 대 언론의 자유’가 됩니다. 명예훼손의 일반적인 법리들은 모두 이러한 대립적인 구도를 해결하고자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언론사간 명예훼손은 구도에서부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차이가 납니다. 일단, 항상 가해자 또는 피고의 위치에 있던 언론사가 피해자 또는 원고가 되어 사건의 구도가 ‘언론사 대 언론사’가 됩니다. 이에 따라 대립되는 법익 역시 ‘언론의 자유 대 언론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되는 법익의 차이, 사건 구도의 차이는 명예훼손 여부를 다루는 법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그 변화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나마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언론사간 명예훼손에 있어서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는 언론사는 그 면책의 기준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피해 언론사는 개인보다 언론매체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피해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비판 역시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점, 언론사간의

상호비판 과정에서 통상 해당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험을 피해 언론사 자신이 자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해 언론사의 비판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가해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언론사의 자체 언론 매체를 통해 충분한 반론과 비판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를 명하더라도 소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의 신문사는 같은 지역의 타 신문사 및 그 기사에 대해 ‘지역신문사의 횡포’, ‘무책임한 보도’라는 식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가 명예훼손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어야 합니다. 일단, ‘지역신문사의 횡포’, ‘무책임한 보도’라는 식의 문제되고 있는 표현들은 그 자체로는 사실의 적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평 또는 견해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나마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면 이렇게 전제된 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신문사의 횡포’, ‘무책임한 보도’라는 식의 표현을 쓴 이 사건 보도는 분명 ○○시청이 귀하의 신문에 낸 광고를 비판하는 기사를 해당 신문이 쓴 바로 그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비평 또는 견해의 표명만으로도 일단 해당 보도는 순수한 비평 또는 견해의 표명이라고 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묵시적, 간접적으로나마 그 일을 보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귀하 신문사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비판의 대상이 언론사인 경우에는 위법성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앞서 본 공익적 목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원고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음이 엿보이기는 하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적 목적성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논조 또는 그 운영 행태 등에 관하여 언론사간 건전한 상호비판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보도는 위와 같은 상호비판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서울지방법원 2002. 4. 10. 선고 2001가합18051 판결)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언론자들이 이를 통하여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비판적 기능,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 만큼 넓어져야 할 것인바, 언론사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도 아니된다.”(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나 22153 판결)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표현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비록 진실이 아니라거나 그 보도의 의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점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해당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역신문사의 횡포’, ‘무책임한 보도’와 같은 표현들이 모욕적이며 경멸적인 표현으로서 위법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 점에 있어서도 언론사간에는 일반 사건에 있어서보다 수인의 한도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언론행위, ‘일제의 주구 노릇’,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 편에서 보도’, ‘조국의 민주개혁을 말살하는 데 앞장선’, ‘남북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부분은 그 각 구체적 행위 태양이나 개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고, ‘일제의 주구 노릇’과 같이 다소 과장되고 모멸적일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언론사 상호간의 비판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진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2가합47094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 상대방 신문사가 귀하 측 신문사에 대하여 ‘지역신문

사의 횡포’, ‘무책임한 보도’라고 한 정도로는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멸적인 언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 표현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언론사의 악의성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당사자가 조건부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언론사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책임 유무에 대하여

문 저는 현재 ‘○○시 택시노동조합’에서 노조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노조 집행부의 공금횡령 문제가 드러나 노조는 노조대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외부에서의 비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 사건을 취재하던 모 시사주간지 기자가 위 사건과 관련해 저를 인터뷰한 후 인터뷰 내용을 주간지에 게재하면서 저의 이름과 직책을 모두 공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위 기사로 인해서 노조에서의 저의 입장이 몹시 난처해졌음은 물론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민감한 문제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그 대상자가 곤경에 처한다는 것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내보낸 기자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해당 기자의 위법성 검토에서 중요한 쟁점은 귀하가 인터뷰에 응할 당시 신원을 숨겨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느냐 여부입니다.

먼저, 귀하가 만일 신원을 숨겨줄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면 이러한 조건을 위반한 해당 보도는 설령 귀하의 동의하에 인터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성명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효과는 승낙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판결은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방영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취재, 방송함에 있어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는 방법 등으로 방영하고 음성도 변조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막

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본래 성(姓), 얼굴 일부 및 음성을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을 아는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 선고 98가합16587 판결)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KBS저널> 프로그램에 자신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20. 선고 2005가단16980 판결)

다음으로, 귀하가 만일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인터뷰에 응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일단,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인터뷰에 응했다면 그 사실 자체로 당사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당사자의 승낙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승낙이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인터뷰를 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승낙의 범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나 승낙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승낙의 효력 범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보도의 성격상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공개될 필요가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반면,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그 대상자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귀하가 비록 명시적으로 인적사항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공익적 측면 및 사익적 측면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터뷰를 승낙할 당시부터 당사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위반한 해당 보도는 승낙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승낙의 유무를 떠나서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한 해당 보도는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성명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해당 기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질 것입니다(언론중재법 제5조제1항, 제30조 제1항).

□ 사진촬영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승낙인지 여부

문 저는 ○○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A생활정보신문사에서 사진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찍어서 올린 사진 한 장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5일장이 점점 사라져가는 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저희 ○○시 외곽에 위치한 ‘◇◇’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5일장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기사화하였습니다. 저는 장터분위기를 대표할 만한 장면으로 무엇을 삼을지 고심한 끝에 ‘리어카’에 고무줄을 싣고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저는 위 사진을 2004년 □월 □일자 A생활정보지 1면에 “장터로 구경오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배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 속의 중년 남성이 저희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 왜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어 보도했느냐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의 행동이 위법한 것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진을 촬영할 당시 그 남성도 제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 인물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와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인격권으로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프라이버시)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프라이버시) 등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사진촬영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년 남성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이미 의문을 제기했듯이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사진을 촬영할 당시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의

사진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니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초상권 내지 프라이버시 침해에 당사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와 똑같은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외주제작사 소속 PD와 인터뷰함에 있어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PD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터뷰와 촬영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그 촬영이 어느 방송에 이따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초상의 사용 등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9. 선고 2005 가합 18444판결)

위 사안에서 판례는 PD가 원고의 차에 탑승해 카메라로 촬영했고, 원고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촬영이 어떤 용도의 방송인지 밝히고 초상 사용에 대한 승낙을 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귀하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촬영 당시 초상권자가 이를 알고서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진의 주인공이 이 사건 보도를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단순히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재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 성폭행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보도의 위법성

문 최근 저의 여동생이 한 동네에 사는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 나이 어린 동생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범행에 대해 쉬쉬했고,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검거된 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월 ○일자 ○○일보 사회면에 동생이 당한 바로 그 범죄에 대한 기사가 실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제 동생의 성씨, 나이, 학년, 주소 등이 적시되었습니다. 위 보도가 나감으로 해서 동네 사람은 물론이고 여동생이 다니던 학교의 친구들도 여동생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범죄사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될 수 있는지, 성폭행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함부로 공개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 원칙적으로 범죄보도에 있어서 범죄사실 자체를 보도하는 것은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범죄보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범죄보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권리의 범위는 범죄사실 보도 자체에만 미칠 뿐 피해자가 누구인지까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해당 신문사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귀하의 여동생의 여러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성폭력사건에 준용되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성폭력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 등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귀하의 여동생의 성씨, 연령, 주소, 직업 등을 공개한 해당 신문사는 위 실정법 규정

을 위반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는 언론중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발행인, 편집인, 기자, 기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부장급) 등을 상대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범죄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 언론사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면 이 역시 형사적으로 문제(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함)되는 것은 물론이며, 민사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를 구성하여 언론사 관계자들과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범죄혐의를 보도함에 있어서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군청 공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최근 저희 군수님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희 쪽에서는 무죄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저희 군수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무고(誣告)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에서 위 사건을 보도하며 마치 저희 군수님이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기라도 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 본문에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목에는 「○○군수 수천만 원대 뇌물 수수», 「수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뇌물 상납」과 같은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하여 군수님은 지역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현재적인 법적 대응은 자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밝혀져 군수님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입증된다면 그때에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과연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2000가합64132)하여 보도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보도라고 할지라도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닌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수사 중’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보도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보도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보도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기사의 본문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더라도 기사의 제목이나 다른 부분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기사를 읽는 것을 전제로 기사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하여 명예훼손 판단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판례 중에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제목 등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인상을 줄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여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피고 신문사들이 게재한 기사들은 그 제목을 ‘가수 ◇◇◇ 또 대마초 적발’ 등으로 하여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피고 □□방송사는 ‘혐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반론보도문에서는 ‘◇◇◇ 또 대마초’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감뉴스에서는 위와 같은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원고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받고 있는데,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4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이 다섯 번째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 독자 및 시청자들은 먼저 위 기사제목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은 대충 읽거나 넘어가기 쉽고, 더욱이 본문에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력을 들추고 있어, 원고가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보다는 이번에도 또 대마초를 피웠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1. 4. 25. 선고 2000가합64132 판결)

“피고 언론사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그 제목을 ‘통조림에 발암물질’, ‘통조림에 포르말린’, ‘포르말린 통조림’, ‘발암 통조림’, ‘통조림에 포르말린 범벅’ 등으로 삼고 있는 바, 이러한 제목과 각 보도의 본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 등이 단순히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하였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원고가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첨가하였거나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통조림을 판매하였다는 인상을 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언론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7. 선고 2000가합68769 판결)

이 사안에서는 위 판례들이 지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제목과 소제목에서 모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기보다 뇌물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일단 보도 대상자인 ○○군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로 해당 보도의 위법성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만일 명예훼손적인 보도라 하여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더라도 보도 당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안에서 귀하측은 현재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결백함이 입증된 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만일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기만 하면 보도의 위법성이 있음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식의 표현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도한 것은 범죄 보도의 원칙을 어긴 위법한 보도라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문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PLUS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 중의 하나인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의 목적이 비록 범죄의 진실을 밝혀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정신을 표현한 문구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이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
- 자유심증주의(같은 법 제308조)
-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키는 것(같은 법 제309조, 제310조의 2)
- 자백의 보강법칙(같은 법 제310조)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등이 있습니다.

□ 공인에 대한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 저는 현재 ○○시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저는 제가 농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민방에 어제와 오늘 연이틀간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저의 이름 대신 이니셜을 사용하여 ‘○○시 시의원 J씨’라고 표기하였으나, 방송에 나온 제 소유의 농장 전경 및 현재 저희 시의원 중에 ‘J’라는 이니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방송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단번에 그것이 저에 대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일반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 범죄보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점 중의 하나가 귀하가 지적한 것과 같은 ‘익명보도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범죄 자체의 보도와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는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하더라도 범죄혐의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도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범죄보도에 있어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이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보도의 필요성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차원의 범죄 행태에 대한 비판적 조명이라든가, 사회적 규범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주위의 환기 등에 범죄혐의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익명보도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無罪推定)원칙’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등)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대상자의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등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러한 익명보도의 원칙을 어기고 성명을 표시하거나 이 사안에서 처럼 성명을 직접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인적사항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하였다면 이러한 보도에는 「공공성」이 없다 하여 명예훼손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그러나 이러한 ‘익명보도의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즉, 공인이 저지른 범죄라든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범죄에 대한 보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익명보도의 원칙’이 후퇴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인이 아닌 일반 사인에 관한 범죄보도로서 이른바 익명 보도 원칙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비밀스런 전과를 공개하였으므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하여 공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 또는 전과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 사인에 관한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건대, 소위 이◇호 게이트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특히 원고의 경우는 원고의 전력을 이용해 정·관계 로비를 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미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지방법원 2003. 9. 3. 선고 2001가합66319 판결)

이와 같은 판시 내용에 비추어서도 사회적인 의미와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보도 및 공인에 대한 보도에서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후퇴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원으로서 ‘공인’의 신분에 있는 귀하의 범죄혐의를 보도한 해당 보도가 비록 대상자의 신분을 알 수 있게끔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이 사안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수사관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토대로 범죄기사를 작성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지 여부

문 약 1년 전 저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구속으로 진행되었고 수사가 개시될 지 거의 1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막 개시될 즈음에 많은 신문들이 저의 혐의사실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무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느니,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세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보도는 경찰서 출입기자들이 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저는 해당 혐의로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보도된 것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해당 범죄를 저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범죄인을 대하듯이 대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언론사의 너무 성급한 보도에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저에 대한 혐의 사실을 보도한 모든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과연 저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지요?

답 귀하가 현재 문의하고 있는 사항은 범죄보도의 절차 및 시점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입니다.

우리의 취재관행상 아직까지 대부분의 범죄와 관련한 보도는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입수한 비공식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자와 수사관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법 제126조에서는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물론, 기자에게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해서 처벌받은 기자나 수사관계자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볼 때 과연 위와 같은 식으로 제공받은 비공식적인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나 방송이 면책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보도의 경우 면책이 되려면 최소 수사 기관이 배포하는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토대로 기사가 작성되거나 아니면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근거해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판결이 있어서 다음에서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한 때 ‘포르말린 통조림’이라고 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들을 입은 통조림 제조업체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검찰이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문 중에서 특히 언론사들에 대한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한편으로는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이에 피고 언론사들이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보도 자체에도 긴급과 신속을 요한다 할 것이고, 그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지휘한 부장검사 인테다가 사적으로 얻은 정보가 아니라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출입기자 전부를 불러 모아 놓고 수사담당 검사가 배석한 상태에서 사전에 작성된 보

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수사착수배경, 단속결과, 향후대책 등에 관하여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관하여 일문일답하는 기회를 부여하며, 압수한 통조림을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 기타 당시 검찰이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취재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이를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하더라도 그것이 종래의 취재 관행에 크게 반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검찰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관하여 일문일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충하거나 의문을 해소하는 절차를 나름대로 거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언론사들이 검찰의 최종적인 공식수사발표에 기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한 이상,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는 취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3. 4. 3. 선고 2001나72526 판결)

이와는 반대로,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발표 등이 없었다고 하여 상당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사 보도 당시는 원고에 대한 강간치상 피의사건이 아직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었고, 그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점, 그 후 원고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강간치상혐의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다만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소외 강○○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사가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상황에서 보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가 없다.”(서울지방법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8777 판결)

결국, 범죄보도의 경우에 최소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가 토대로 되어야만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이전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개인적인 확인을 받아 보도한 정황만 가지고는 면책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 4 편

언론보도와 조정절차

제 1 장

언론중재위원회

제 2 장

언론조정절차 일반

제 3 장

기타 사항

□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문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답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구」입니다.

언론중재법 제7조(언론중재위원회)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TV, 라디오와 같은 ‘방송’이나 신문,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 배상 사건을 조정·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며, 불공정한 선거보도일 경우 사과문, 경고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결정을 내립니다.

□ 중재부의 구성 및 중재위원의 자격

문 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경우 어떠한 분들이 조정·중재를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는 언론중재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중재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중재부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특히 중재부의 장(중재부장)만큼은 반드시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재부를 구성하는 중재위원은 4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재위원 정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 그 밖에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고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7조 제3항).

이것은 곧 개개의 중재부의 인적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 중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중재부는 현직 부장판사가 중재부장 직을 맡고 있으며, 변호사·전직(前職) 언론인·언론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 등이 골고루 중재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수원)·강원(춘천)·충북(청주)·전북(전주)·경남(창원)·제주(제주)에 총 16개의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서울에는 ‘제1중재부’부터 ‘제6중재부’까지 총 6개의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중재심리를 맡은 중재위원들은 공정한 조정·중재를 위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고,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8조 제1항).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및 ‘중재’의 의미와 차이점

문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조정(調停)’ 및 ‘중재(仲裁)’란 어떤 것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절차로서 구정간법에서 규정한 ‘중재’가 있었으나, 이는 본래 의미의 ‘중재’가 아니라

‘조정’에 가까운 분쟁해결수단이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기존의 ‘중재’가 ‘조정’으로 바뀌고, 진정한 의미의 ‘중재’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정과 중재의 의의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調停)’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와 같은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조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당사자 간의 ‘화해’라는 점 때문에 조정은 원칙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나 보도의 주체인 언론사, 그 어느 편도 아닌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중재부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끕니다. 물론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 직권조정결정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 단서). 또한, 중재부는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다만, 조정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 내용이 조정심리조서에 기재되면 이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같은 법 제23조).

‘중재(仲裁)’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는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24조). 즉,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중재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불복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단심(單審)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재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제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중재결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25조).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진정한 의미의 중재가 도입되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조정이며 중재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는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에 의한다는 합의를 담은 당사자 간의 계약(상사중재는 이런 계약에 의해 중재가 성립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인이 언론사에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언론사에서 중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정이나 중재 모두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신속·간이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代替的 紛爭解決手段)’이며, 그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조 정	중 재
개 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와 같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절차 개시의 원인	당사자의 선택	중재합의 (당사자의 서면합의)
소송절차와의 관계	보완적 관계	대체적 관계
불복 방법	직권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중재결정 취소의 소
효 력	임의조정에 대해서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인정	중재결정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인정

제 2 장 언론조정절차 일반

제 1 절 조정신청 대상

□ ‘인터넷 기사’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문 프레시안이나 브레이크뉴스, 조선닷컴이나 조인스닷컴, 네이버나 미디어 다음과 같은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나요? 만일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려면 그 대상이 ‘언론보도’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인터넷신문인 경우에는 신문법 제2조 제5호상의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문법 제2조 제5호).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을 말합니다(신문법 시행령 제3조).

만약 인터넷신문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아직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제가 추구하는 바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등록 여부에 의해 조정신청의 가부를 결정짓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귀하가 문의한 매체가 신문법상의 독자성과 지속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스의 1차 생산 및 유통을 하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인 프레스안이나 브레이크뉴스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뉴스의 2차 유통을 중심기능으로 하는 종속형 인터넷신문인 조선닷컴이나 조인스닷컴은 오프라인 매체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생산한 기사를 주로 전재하므로, 자체 사이트에서 생산한 기사가 전체 기사에서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으로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콘텐츠의 2차 유통을 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미디어 다음은 다른 매체와 전재 계약을 맺고 뉴스를 게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지 않아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종속형 인터넷신문과 포털 뉴스에 대한 구체방안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매체로 인정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함으로써 기사의 삭제나 반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정대상 매체가 아닌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관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계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담론-정보제공)과 전문성 여부(아마추어리즘-프로페셔널리즘)의 두 차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 태	중심기능	대 상	조정신청 가부
독립형	뉴스의 1차 생산 및 유통	- 시사형 (프레시안, 브레이크뉴스 등) - 전문형(아이뉴스24, 이데일리 등) - 지역형(디지털성남 등)	○
종속형	오프라인 뉴스의 2차 유통 종합 콘텐츠 유통 1차 뉴스 및 콘텐츠생산	- 언론사 닷컴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등) - 언론사내 온라인조직 (기존 언론사내 온라인뉴스서비스)	X
인덱스형	뉴스콘텐츠의 2차 유통	- 포털 뉴스 (네이버뉴스, 미디어 다음 등)	X
토론형	뉴스를 기반으로 한 논평 및 토론/패러디	- 논객/방담 사이트 - 패러디사이트	X

PLUS

‘인터넷 방송’은 신문이 아닌 방송이므로 신문법에서 규정한 인터넷신문에 속하지 않으며, 방송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방송(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방송은 현행법 하에서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미등록의 ‘사보(社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보(社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위 사보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배포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관계기관에 등록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는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보가 정기간행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면 사보에 실린 내용은 언론보도가 되어 정정보도청

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핵심은 과연 ‘사보(私報)’가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의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신문법 제2조 제1호가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신문법 제2조(용어의 정의)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따라서 일단, 해당 사보가 정간법상의 정기간행물에 해당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사보가 이러한 최소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아마도 일반적인 형태의 사보는 일종의 소식지로서 회사 내부의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보는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기타 간행물)에 해당되고, 따라서 언론중재법 및 신문법상의 정기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여부는 조정신청 대상매체로서의 적격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며, 사보는 등록 예외를 규정한 신문법 제12조(등록) 단서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보가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지만 하다면 해당 사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합니다.

□ ‘가판(街販) 신문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

같은 날짜의 모 일간지 기사 중 가판에 실렸다가 후속판에서 빠진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인 일간지들은 한 날짜의 신문이라 하더라도 판갈이를 통해서 여러 판의 신문을 찍어냅니다. 조간신문의 경우, 전날 저녁 7시 전후로 ‘가판(街販)’이라고도 하는 ‘초판(初版)’이 인쇄되어 배포됩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후속판이 각 가정에 배달되기까지 판이 거듭되고 이 과정에서 초판에 실린 기사가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판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초판이 되었든지 각 가정에 배달되는 후속판이 되었든지 신문 지면에 활자로 인쇄되어 배포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판수에 상관없이 ‘공표(公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을 그 대상으로 삼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역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에 게재되었다가 후에 삭제된 기사에 대해서도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속판에서 초판에 실린 기사에 대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히 문제되는 기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초판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습니다.

□ A4 용지에 인쇄된 ‘전단지’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

현재 A종교단체에서 B종교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A4 용지’에 인쇄하여 수 차례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전단지에 실린 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라도 위 전단지 내용과 관련하여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려면 그 대상이 ‘언론보도’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인

쇄물인 경우에는 신문법 제2조 제1호상의 ‘정기간행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의미합니다(신문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정기간행물이 될 수 있으려면 해당 인쇄물에 ‘제호’가 있어야 하고, 해당 인쇄물을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해당 전단지에 아무런 제호나 발행인 등의 표시가 없다면 단지 수차례 배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기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대상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제 2 절 조정신청 방법

1. 조정신청서 작성

□ 조정신청서 작성요령

문 최근 여러 신문, 방송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귀하가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인 경우에는 저희 중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다 반론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중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에 있는 ‘조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저희 중재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에 의한 서면신청, 중재위원회 홈페이지나 이메일(counsel@pac.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는 구술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구명을 보면 정정보다,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 기사를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정정보도는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당해 언론사의 명의로,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자 또는 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매체에 자신의 결백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 양식>

언 론 조 정 신 청 서				
① 청 구 명	(☐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 손해배상) 청구			
신 청 인	② 성명 또는 단체명		③ 대표자 성명	
	④ 주소 또는 소재지		⑤ 주민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⑦ E-mail	
조정 대상	⑧ 매체명			
	⑨ 보도일자			
	⑩ 보도면 / 보도시간			
	⑪ 보도가 있음을 안 날			
⑫조정신청취지 (별지 작성 가능)				
⑬조정신청이유 (별지 작성 가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 조정대상 표현물의 사본 ※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및 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수수료
				없 음

신청인은 다수의 청구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청구명에 체크(√ 또는 ■ 표시)를 하면 됩니다.

신청인란은 개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단체 고유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에 관한 보도인 경우(단체나 기관의 장에 관한 개인 보도인 경우도 포함)에는 개인 명의로, 단체에 관한 보도인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신청서 표지에 ‘별지’이라고 기재하시고, 별지에 다 신청인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따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되어 피해를 입은 자이어야 하므로, 대리인의 성명이 아닌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의 경우 적어도 사회 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정관이나 회의록(대표 선출 관련)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은 매체명, 보도일자, 보도면/보도시간, 보도가 있음을 안 날 등을 기입하고, 여러 매체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를 각 매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신청인은 보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물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에는 보도기사의 전문을, 영상매체의 경우에는 녹화물(녹화테이프나 녹화CD)과 녹취록(녹화내용을 작성한 문서)을, 라디오의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은 언론사가 보도물을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할 경우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언론사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에는 신청인이 언론사에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즉, 정정이나 반론을 청구할 때는 「보도문의 보도방법」과 「게재 또는 방송을 원하는 보도문」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적으면 됩니다.

조정신청취지 작성례

1. 정정, 반론,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1) 보도문의 보도방법

▶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인 경우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보 사회면에 별지 정정보도문(또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 방송인 경우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TV <○시 뉴스> 프로그램에 별지 정정보도문(또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 인터넷신문인 경우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뉴스>(www.○○news.com)의 초기화면에 별지 정정보도문(또는 반론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게 하라.

2) 게재 또는 방송을 원하는 보도문

▶ 정정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또는 방송)은 지난 ○월 ○일자 ○면에(○○프로그램에서)

“...”제목으로 ~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반론보도문

1. 제목 :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또는 방송)은 지난 ○월 ○일자 ○면에 (○○프로그램에서)

“...”제목으로 ~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하다고 밝혔습니다.

▶ 추후보도문

1. 제목 : 추후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또는 방송)은 지난 ○월 ○일자 ○면에 (○○프로그램에서)

“...”제목으로 (신청인)이 ~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또는 재판 결과), (신청인)은 위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만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이유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당사자 지위)」,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또는 신청을 하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조정신청이유 작성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신청인은 ○○시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조정대상보도에서 K씨라고 언급된 자이고, 피신청인은 중앙일간지 <○○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일보> ○년 ○월 ○일자 ○면 “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된 보도내용 약술)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사실은 ~(사실 적시 및 반박) 합니다.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신청인은 이 보도로 ~(피해사실 적시)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2. 조정대리

□ 조정대리의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

문

제가 다른 사람의 조정신청사건에 대리인으로 출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귀하가 조정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라면 귀하는 우선 언론중재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을 맡은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이러한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9조(조정)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재부의 허가는 일종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일관된 허가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정실무에 따르면 언론사의 경우에는 통상 데스크급 이상이 되어야 조정대리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언론사의 규모나 조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적어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도 당사자인 법인과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참고).

이처럼 조정대리를 허가받은 대리인은 당사자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조정기일에 출석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한 사람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위임장과 신분증은 중재부의 허가 없이 조정대리를 할 수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라면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치 않고,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3조 제2항).

PLUS

법률에서 ‘대리(代理)’라고 함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리에는 크게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임의대리(任意代理)**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타인(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총칭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법원이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조정행위에 관한 특칙

문 며칠 전 TV방송에서 보도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의 모습이 방영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로서 해당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고 싶은데 저는 나이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여러 법률적인 행동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 혼자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父 또는 母인 친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민법 제911조),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3조(미성년자의 조정행위) ①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재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행위’란 조정신청행위를 포함한 조정신청의 취하, 화해 등 조정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혼인 중인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그리고 조정심리기일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피해당사자인 미성년자도 심리진행상 필요한 경우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3조 제2항). 이때 대리인에 의한 다른 조정신청과의 차이점은 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법정대리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도 귀하처럼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직접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PLUS

친권(親權)이란 ‘미성년자인 미혼의 자식에 대한 권리’로서 쉽게 말해 아직 나이 어린 자녀를 성년이 되기까지 키우고 가르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친권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부모(父母)**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1,2항). 부모 양쪽 모두에게 있다 보니 때로는 친권 행사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또, 부모 중 어느 일방이 법률적이거나 사실상의 이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나머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 만일,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행사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역시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911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된다.’

3. 조정신청 기간

□ 조정신청 기간(1) : 일반적인 조정신청 기간

문 2008년 5월 2일자 모 일간지는 제가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고 보도하였고, 저는 9월 5일에야 이러한 보도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정정보도에 대한 조정신청 기간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언론중재법 제18조(조정신청)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 제1항(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

즉,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및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의 조건을 둘 다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이나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 도과한 경우’,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이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도과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인 12월 5일’ 및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인 11월 2일’을 둘 다 충족시켜야 하므로, 신청인은 11월 2일까지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론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신청기간은 정정보도청구와 동일하며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후보도청구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18조 제3항).

□ 조정신청 기간(II): 피해자가 언론사와 직접 협의를 거친 경우의 조정신청 기간

문 지난 2008년 8월 21일에 의료관련 특수주간신문인 A신문이 저에 대한 허위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사실을 8월 30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신문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신문사에서는 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9월 1일에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위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 언론중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신청서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8조(조정신청)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 제1항·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정신청 기간과 관련한 위 조항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은 보통의 경우에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언론사와 협의를 한 특수한 경우에는 그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와의 협의와 관련한 14일 규정은 법원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은 도과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라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합니다(언론중재법 시행령 제13조). 참고로 법조문은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이므로, 문서에는 이메일로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사안의 조정신청 기간을 살펴보면, 귀하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이 8월 30일이었으니 본래 조정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가 되겠으나 귀하와 신문사측의 협의가 불성립된 9월 1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9월 15일까지를 조정신청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청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9월 15일까지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조정신청 기간(Ⅲ) : 피해자가 언론사에게 직접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의 조정신청 기간

질문 저는 모 방송사의 2008년 9월 5일자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송 당일 저는 보도 내용을 인지하였고, 그 다음날인 9월 6일, 해당 방송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해당 방송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구한 때로부터도 벌써 2주가 지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조정신청 기간이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인데 반하여, 피해자가 언론사나 방송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를 했을 때의 조정신청 기간은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사안에서 귀하는 방송 내용을 인지한 후 방송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므로 후자의 신청 기간에 따라 조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에 따라 조정신청 기간을 산정하고자 할 때 사안에 따라서는 그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처럼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사에 직접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에서 여러 주(週)가 지나도록 묵묵부답인 경우에는 과연 어느 시점을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 볼 것인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언론중재법제15조의 해석상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후 7일이 지난 시점을 협의불성립으로 보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 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위 규정은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받은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할 최후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에 아무런 반응없이 위 시점을 도과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게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문 게재에 적극 협조하도록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이 신청기간을 늘려 신청인에게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려한 입법취지와 함께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언론중재법 시행령제13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는데 언론사에서 묵묵부답인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조정신청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귀하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조정관할

□ 조정심리가 이루어지는 곳을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문 저는 경북 영천에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에 소재한 모 중앙방송 뉴스 시간에 저희 공장이 폐수를 하천에 방류했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갔습니다. 위 보도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지역의 중재부에서 조정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일반 민사소송이 그러하듯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 역시 ‘관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정 등의 관할권은 「조정 등의 대상이 된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경북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조정대상 언론사의 소재지가 서울에 있으므로 서울중재부에서 조정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관할 중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6조 제3항). 예를 들어 **KBS** 창원총국에서 방영한 보도의 경우, 관할중재부가 서울임에도, 사실상 보도가 이뤄진 곳이 창원 일대이므로 경남중재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는 16개의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언론조정중재규칙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제1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서울제3중재부 서울제4중재부 서울제5중재부 서울제6중재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원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일원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일원
충북중재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일원
전북중재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일원
경남중재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일원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일원

PLUS

관할(管轄)이라 함은 재판권(중재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중재부) 사이에서 어떤 법원(중재부)으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담당하게 할 것이냐라는 ‘재판권(중재권)의 분장관계(分掌關係)’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절 조정사건 처리절차

1. 조정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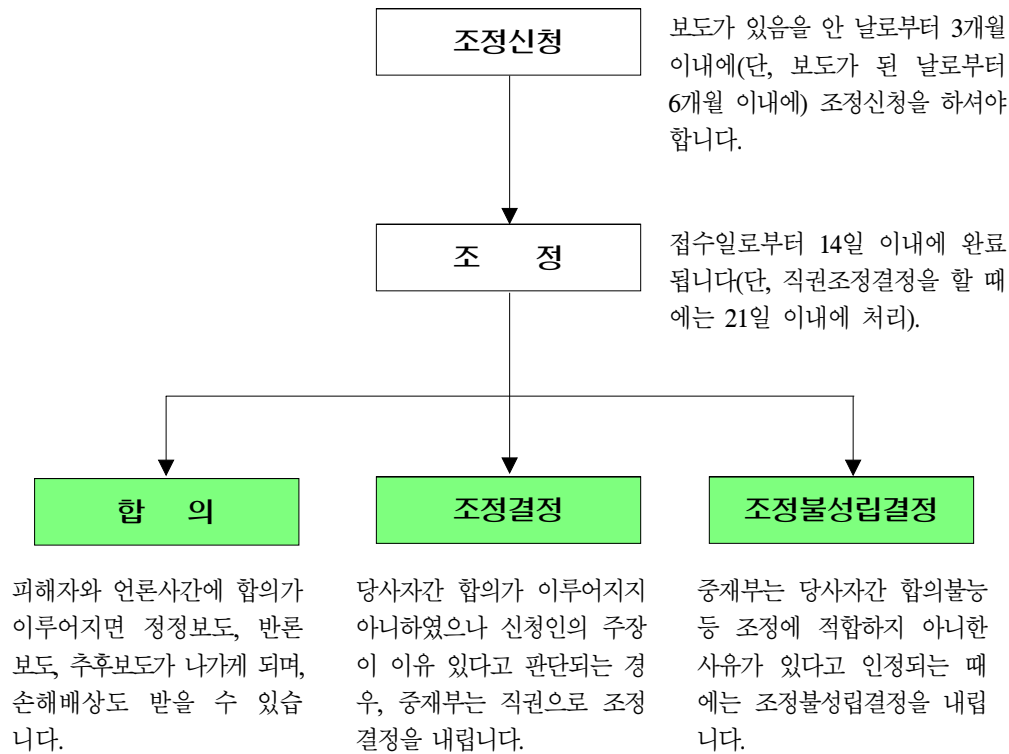
□ 조정신청서 접수 후 조정심리가 진행되는 절차

문 저는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로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신청서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신청은 처음이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중재부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심리기일(통상 접수된 날로부터 7일~10일 사이)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후 담당 조사관은 신청인과 언론사에게 출석요구서와 심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송합니다. 심리에 필요한 서류로 신청인에게는 위임장과 대리허가신청서를, 언론사에는 조정신청서 사본, 위임장, 대리 허가신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심리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심리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체나 기관의 장이 개인 명의로 신청을 하는 경우 소속 직원이 대리를 할 수는 없으며, 가족이나 변호사만이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조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는 1~2번 정도 개최되며, 통상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중재위원회는 법원처럼 강제력이 있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분쟁에 개입하여 화해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재부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을 듣고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하여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게 조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립니다.

□ 조정신청서 접수 후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방법

문 그제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생각이 좀 바뀌어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오늘쯤이면 상대

방 언론사에 조정신청사실이 통지되었을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취할 수 있나요? 취하할 수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답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당사자는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8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8조(조정신청의 취하) ①조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도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취하서 부분이나 조정심리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 다만,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르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면으로 취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술로 취하하는 것입니다.

우선, 원칙적인 조정신청 취하의 방법은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신청인)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재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취하서가 접수되면 해당 중재부에서는 취하서의 부분을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이로써 해당 사건이 신청인의 취하로 종결되었음을 알릴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사건에서는 소송절차와는 달리 상대방 언론사가 사건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조정심리기일에서 진술하거나 심리를 거친 뒤에라도 조정신청 취하 시에 상대방 언론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참고).

다음으로, ‘구술’에 의한 조정신청 취하입니다. 이것은 해당 사건의 조정기일에 서만 가능한 취하 방법입니다. 신청인은 중재위원들의 면전에서 ‘취하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취하의 의사표시는 해당 중재부의 조사관에 의해서 조정심리조서에 기록되어 남습니다. 이러한 조정기일에서의 구술에 의한 조정신청 취하는 위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8조 제2항의 해석상 피신청인이 조정심리에 불출석하였더라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아직 조정심리가 열리기 전이라도 조정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중재부에 접수함으로써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PLUS

문서의 종류에 관한 법률 용어에는 원본·정본·등본·초본·부분 등이 있는데, 그 뜻이 모두 다릅니다.

먼저, **원본(原本)**이라 함은 문서 그 자체 혹은 원래의 문서를 의미하고 이 점에서 나머지 문서의 종류와 구별되며 원본 이외의 문서들은 모두 원본의 **사본(寫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본(謄本)**이라 함은 원본 전부의 사본임을 의미하는 데 반해, **초본(抄本)**은 원본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사본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본(正本)**은 문서의 등본 중에서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분(副本)**이란 원본에 대응하고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법률적 효력이 가장 약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원본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동일하면 되므로 복사한 서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조정심리에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에 대하여

문 저는 지난 ○월 ◇일자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방송을 본 직후 하도 억울하여 해당 방송사에 항의전화를 하여 담당 PD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항의는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며칠 전의 담당 PD의 태도로 보아 조정심리에 출석을 할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저와 같은 경우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까요?

답 조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해당 중재부의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들에게는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중재부가 해당 사건을 맡습니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1항). 중재부가 정해지면 해당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해당 중재부의 조사관은 이와 같이 정해진 1차 조정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양 당사자, 즉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같은 법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들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경우입니다. 신청인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 본문 전단). 구 정간법에는 1회라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언론사인 피신청인과 같이 2회에 걸쳐 불출석을 해야 불이익을 주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경우입니다.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의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 본문). 이 불출석에 따른 합의 간주의 효력은 조정결과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23조).

다만,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4항).

결론적으로, 귀하가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방송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2회에 걸쳐 불출석하게 되면 합의 간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적절한 피해구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조정결과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정의 유형별 특징 및 그 차이점

문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일차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당사자간 합의 외에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무엇이 있는지의 문의 드립니다.

답

당사자간 합의 외에 언론조정사건을 맡은 해당 중재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각하결정, 기각결정이 그것입니다.

첫째, **직권조정결정**입니다. 중재부가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 전단). 이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적인 조정신청 사건의 경우와는 다르게 7일이 더 연장되어 조정 신청 접수 후 2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 후단). 이와 같은 조정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둘째, **조정불성립결정**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중재부가 항상 직권조정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신청사건에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21조 제3항).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란 사안이 복잡하여 단기간(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또는 21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조정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거나 너무나 대립적이어서 직권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셋째, **각하결정**입니다. 각하결정이란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을 말합니다(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란 신청기간을 도과하거나 조정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중재부의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1항).

넷째, **기각결정**입니다. 기각결정이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을 말합니다(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중재부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의 내용이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 조

정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경우,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 등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조정절차상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간 합의’와 다른 점 및 조정절차 밖에서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문 저는 며칠 전 모 지방일간지를 상대로 해당 지역 중재부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정심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해당 신문사 기자로부터 ‘합의를 보자’는 취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합의가 조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조정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만약 제가 해당 신문사의 요구에 응하여 합의를 보고자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 조정신청을 한 후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제한되거나 반드시 조정절차상에서만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신청을 한 후에도 얼마든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조정절차를 통한 합의와 조정절차를 통하지 않은 합의는 효력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조정절차를 통해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이 합의는 언론중재법 제23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당사자들은 합의된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도 언론사에게 합의된 내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특히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반면, 조정절차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이때의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합니다(민법 제731조). 화해계약 역시 화해 당사자들을 구속

하는 힘이 있습니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또한, 언론사가 화해계약상의 내용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요컨대, 화해계약에 불과한 당사자간 합의에는 조정절차상 합의와는 달리 기판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귀하는 조정절차 밖에서 언론사와 합의를 보고자 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통상 언론사는 ‘주식회사(株式會社)’와 같은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합의 장소에 나와 합의를 보는 주체는 그 언론사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누군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인 쪽에서는 합의 장소에 나온 상대방이 과연 해당 언론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러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합의 장소에 나오기도 하는데, 해당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라거나 원 기사를 쓴 기자라고 해서 항상 해당 언론사를 대리·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적법한 대리권자 내지 대표권자인지를 반드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대리권 내지 대표권 수여절차 없이도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의 직함을 쓰는 자이든가, 최소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와 같은 직함을 쓰는 자뿐입니다(상법 제395조). 만일, 위와 같은 직함을 쓰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 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당사자에게 합의에 관련된 업무 일체를 처리할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해당 언론사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는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 제가 최근 모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결과, 해당 중재부로부터 방송사에게 반론보도를 명하는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중재위원회로부터 위 조정결정에 대해서 피신청인쪽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정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

조정절차에 있어서 심리를 맡은 중재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지만,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 이를 직권조정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직권조정결정은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같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23조 본문). 그런데, 이러한 조정결정은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같은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다시 말해,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일단 합의가 성립되거나 합의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확정적입니다만, 직권조정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이 유동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을 문서에 담아 조정결정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 해당 중재부의 중재위원들이 작성된 결정문에 서명·날인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22조 제1항). 위와 같이 작성된 조정결정문의 원본은 중재부에서 보관하고, 조정결정문 정본을 해당 중재부의 조사관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달증명으로(또는 직접) 당사자와 그 조정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25조). 이때 조정결정문은 배달증명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은 날짜를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조정결정문을 수령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 만일, 이의신청 기간 내에 당사자에 의한 이의신청이 중재부에 접수되면 중재부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26조 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피신청인인 방송사가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에는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는 원고가 되며 상대방인 언론사는 피고가 됩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 이 경우 중재부는 해당 사건

기록 일체의 등본을 관할 법원으로 신속히 송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27조 제1항).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으로 보기 때문에 소장을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5조 제1항). 이러한 자동소제기 제도는 당사자들에게 소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이의신청의 남발을 막는 등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 4 절 조정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

□ 조정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문 얼마 전 ○○방송 뉴스 프로에서 ‘◇◇◇침대에서 전자파가 쏟아진다.’는 제목의 방송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침대를 구입한 소비자로서 위 뉴스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송이 나간 후 ◇◇◇침대 제조업체가 해당 방송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신청을 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침대를 구입한 소비자로서 해당 방송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해당 조정사건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조정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알고자 조정사건 기록을 열람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조정기록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7조 제1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7조(기록의 열람등) ①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조정등의 기록의 열람, 복사 또는 등본, 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조사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조정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에 국한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조정사건의 당사자로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정신청인과 보도의 주체이자 조정신청을 당한 언론사를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조정절차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비공개(非公開)로 진행된다는 점(언론중재법 제19조 제8항), 조정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조정대리인뿐이고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조정기일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점(언론조정중재규칙 제1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정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또한 넓게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정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관한 조정실무를 살펴보면, 언론사의 경우에는 데스크급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언론사의 규모나 조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적어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도 당사자인 법인과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되어야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참고).

결국,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라는 정도의 이해관계만으로는 해당 조정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조정결과만을 알고자 한다면 굳이 조정기록을 열람할 필요 없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실무상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고, 저희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언론중재」에도 중요한 조정사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3 장 기타 사항

□ 신문기사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모 골프전문지에 소속된 기자로서 특정 골프장을 알리는 홍보성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최근호에 제가 쓴 기사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기사가 반복해서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위 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해당 잡지사와 어떠한 계약도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당 기사의 글쓴이로서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이 사안은 소위 말하는 ‘기사의 무단전재(無斷全載)’이고, 타인이 쓴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했을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사는 언어나 문자에 의하여 글쓴이인 기자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물론,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강연 및 공연 안내, 유명인사의 동정, 각종 행사와 관련된 단신 등과 같이 철저히 6차 원칙에 의해 작성된 기사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칼럼, 논설, 사설과 같은 평가적 기사는 물론이고 사실적 주장을 주로 담고 있는 시사보도라도 취재기자 및 편집기자들의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다면 해당 기사는 어문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 선고된 바 있는 하급심 판결에서도 모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저작물로 본다는 전제에서 위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다른 신문사의 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잡지사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침해행위의 중지(저작권법 제91조) 및 손해배상(같은 법 제93조)의 청구, 형사적으로 권리침해(같은 법 제97조의 5)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의 편집권한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문 저는 최근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이 어린 딸과 함께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저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 방송사의 기자가 저와 비슷한 처지의 미망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자 한다며 취재에 응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무엇보다 아직 나이 어린 저의 딸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을 고취해주기 위해서 취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영된 해당 프로그램을 보니 저에 대한 내용만 방영되었고, 저의 딸에 대한 내용은 조금도 방영되지 않아 해당 방송사에 대해 서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방송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언론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가지는 언론의 자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도 및 논평의 자유, 취재의 자유, 보급의 자유 등 대외적인 자유와 더불어서 편집의 자유, 편성의 자유 등 대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따라 언론사는 어떤 기사나 방송을 제작하면서 편집권을 자유롭게 행사합니다. 재단사가 옷감을 이리 저리 오리고 붙여서 입기에 편하고 보기에 좋은 옷을 만들듯이, 언론사는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세워진 프로그램 제작 의도에 맞게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편의 방송이나 한 편의 기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해당 방송사에서는 위와 같은 편집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 귀하의 딸에 대한 부분은 잘려진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사가 어떤 기사나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집권을 행사해도 일단 그것이 헌법 제21조 제4항이 정하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특정인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불완전한 사실주장이 된다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

니다. 그러나 해당 방송의 경우에 귀하의 딸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고 해서 미망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했던 해당 보도가 불완전한 사실주장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안에서의 해당 보도가 위법하거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기자의 취재행위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기자 한 사람이 저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인터뷰를 요구하고,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제출 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과연 기자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답 흔히 언론의 공익성으로 인하여 기자의 취재행위가 공적인 활동이 아닌 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자의 취재활동은 어디까지나 사인의 활동이고 전혀 공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에 ‘기자의 취재에 응할 의무’라고 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은 사인(私人)에 불과한 기자의 취재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헌법 규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보장받습니다(헌법 제12조, 제17조, 제23조).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를 가진 언론기관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만일 공공의 이익과 필요 등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합니다.

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제한)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과 침해를 정당화시킬 만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제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의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법률의 일종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에게는 기자의 취재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취재행위에 응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합의되었던 보도물이 다시 보도된 것에 대해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문 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가 있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모 방송국에서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중이라며 저와 제 아이들에게 출연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상담 과정이 보도되는 것에 동의하고 촬영에 응했는데 이후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 나온 아이들의 모습은 매우 난폭하게 편집되었고, 엄마인 저를 때리는 장면까지 보도된 것입니다. 게다가 모자이크 처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의 친구와 주변 학부모들까지 알게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마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방송사에서 얘기할 때는 상담 과정만을 보도하겠다고 해서 그말을 철썩같이 믿었는데 저와 약속한 내용 이상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고 고민하던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조정 합의되어 5백만원을 언론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위 방송

사가 다시는 저와 제 아이들 관련 녹화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까지 받았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난 바로 며칠 전 예전 문제가 되었던 녹화물을 저 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뉴스 보도에 다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년 전 보도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보도로 인해 고등학교에 진학해 새로운 생활과 함께 증세 또 한 많이 완화된 아들은 또다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괴로워하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의 내용은 얼굴 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 상)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 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또는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초상이 함 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퍼블리시티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합의가 되어 귀하가 방송사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은 과거 조정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귀하가 방송사와 조정과정 중 합의 당시 추후에 녹화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약속이 없었다면 방송사가 다시 재 생, 보도한 것에 대해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합의되었 던 내용이 추후 녹화물을 재생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약속은 아니기 때 문입니다. 방송사가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시 녹화물을 사용한 것 은 귀하를 포함한 귀하 자녀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방송사가 기존 보도에 대한 행위의 책임을 위자료를 통해 보상한 상태에 서 다시 녹화물을 재 보도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귀 하 자녀들은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제 5 편

언론보도와 법적절차

제 1 장

제소 절차

제 2 장

강제집행 절차

제 3 장

가처분 절차

제 1 장 제 소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어 반론보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언론사 입장이 워낙 완강하여 조정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하는 방법에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 그리고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 정간법에서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필요적 전치주의). 하지만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이는 조정성립이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에 드는 시간적 비용을 줄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는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에는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어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조정절차상 합의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

문 얼마 전 저희 방송사가 제작한 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이었는데, 저희는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응 타당하며 그 제출한 증거가 진실하다고 생각되어 조정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측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의한 직후 원래의 보도 내용과 부합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측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정합의에서 명시했던 보도일자가 임박하였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정정보도해주기로 합의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은 몹시 신뢰할 만합니다. 저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언론인의 양심상 도저히 허위의 보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서조차 합의한 내용대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합의한 내용을 번복할 수는 없을까요?

답 조정결과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이 합의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존재합니다(언론중재법 제23조). 또,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20조), 결국 조정 합의가 성립한 후 그 내용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 등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 등이 가지는 내용적 구속력으로서 ‘기판력(既判力)’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가 소속된 방송사는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인 측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상의 간접강제를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법적으로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재심(再審)’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편 제451조 이하에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11가지 재심사유 중 어느 한 가지에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이 11가지 재심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며, 만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이러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해서도 준용되고, 따라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합의에 대해서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 중에는 ‘판결’에서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이 많으므로 그 전면적 준용은 될 수 없으며,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2호), 대리권의 흠결(3호), 법관의 직무상의 범죄(4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5호)로 인한 경우 정도가 준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귀하는 준재심(準再審)의 소를 통해서 이 사건 조정합의의 효력을 다룰 수는 있으나 실제 재심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민사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써 준재심에 준용될 만한 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준재심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언론사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민사소송법 제500조), 사안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화해조서를 토대로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것이나 간접강제에 기한 배상금의 부과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조정절차상 합의한 내용대로의 이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자동소제기 되는 관할은 어디인지

문 저는 ○○방송사와 1년 전에 중요한 사회 이슈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와 사회 분위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방송사는 그 당시 인터뷰 내용을 방송의도에 따라 편집하여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최근에 다시 방영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와의 합의는 여의치 않았고, 중재부에서는 ○○만원을 배상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인 언론사는 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중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으로 자동소제기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관할 법원은 어디로 지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조정절차에서 중재부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이 직권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일방이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사라지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원고가 되며 상대방인 언론사는 피고가 됩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

그럼 이 경우 소의 관할이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모든 소송사건에 토지관할권을 생기게 하는 보통재판적을 피고와 관계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6조). 이에 따라 정정보도를 명하는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는 언론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이 됩니다. 이는 반론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3항).

다음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관할을 정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최대 세 개의 관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는 「피고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특별재판적으로서의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모두에 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지와 관련하여서는 사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원고가 지정하는 일정 지역의 가판대에서 신문이 판매되었거나, 방송 전파가 송출된 곳이라거나, 방송이 도달한 TV나 라디오가 있는 가정이 있는 지역이었다거나,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소재지였다는 등의 실제 명예훼손의 요건 사실과는 관련성이 희박한 재판적을 근거로 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에는 관할이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므로, 언론조정중재규칙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직권조정결정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할 지정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조정신청인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양식서에 제1심 관할법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인 피해자에게 관할 법원 지정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제26조(이의신청의 방법등) ③손해배상청구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언론사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원고인 피해자는 제1심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관할법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결국, 관할 지정권이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언론사의 소재지(혹은 언론사 대표의 주소)나 의무이행지(가령 원고의 주소) 또는 사건과 관련 있는 불법행위지 중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 2 장

강제집행 절차

□ 조정절차를 통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문 저는 ○○일보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여 언론사와 정정보도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정정보도의 일자, 지면, 방법 등은 모두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합의된 정정보도의 일자가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 언론사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절차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 제23조에 의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면 화해를 변론조서 등에 적은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법원의 관여 하에 성립되는 재판상 화해에는 재판외의 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합의는 ‘기판력’, ‘형성력’등과 같은 판결의 효력뿐만 아니라 합의사항(보도의무)을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인 ‘집행력’을 가지고, 언론사가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정문을 채무명의로 삼아 강제집행(간접강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의뿐만 아니라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주어집니다.

그럼 간접강제 신청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하는 해당 조정결정문에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30조). 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방식과 절차에 관해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768호)」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의 내용 중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관할 : 조정심리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은 해당 중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해야 합니다(위 규칙 제3조).
- 신청 : 집행문부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심리조서의 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비용 등을 예납해야 합니다(위 규칙 제4조).

위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에는,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경매’, ‘대체집행’, ‘직접강제’등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언론사의 보도의무는 다른 주체에 의한 이행이 불가능한 일종의 ‘부대체적 작위채무(不代替的 作爲債務)’이므로 이러한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오로지 간접강제만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강제신청은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고(민사집행법 제4조),채무자가 신청인에게 해야 할 의무의 내용 및 상당한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 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면 통상 법원은 결정으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이 도과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물론, 이 배상금의 집행에 관해서는 금전집행의 방법에 따라 별도의 추심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문 부여 ⇒ 간접강제 신청 ⇒ 간접강제 결정 ⇒ 예고 기간 경과
⇒ 배상금의 추심(금전채권 집행방법에 따름)

□ 조정화해조서에 기재된 보도일자를 도과한 경우, 배상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문 최근 저희 신문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정신청인과 반론 보도를 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으로 말미암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게 되었고, 조정신청인은 저희를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가 결정될 경우 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요?

답 신청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신청한 간접강제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언론사에게 간접 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 결정에는 강제집행의 권원인 화해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보도의무와 이를 이행해야 할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언론사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고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무상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금(定期金)으로 명령한 예

“채무자가 위 이행기간 이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일시금(一時金)으로 명령한 예

“채무자가 위 기간 이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

결국, 조정합의에 따른 보도의무를 지는 언론사가 합의 시에 정한 날짜까지 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 언론사가 집행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금의 지급기일은 조정합의 시에 정해진 보도일자를 경과한 다음날부터가 아니고 「집행법원이 예고한 기간을 도과한 다음날부터」가 될 것입니다.

□ 언론사에서 합의한 반론보도문을 조금 다르게 게재한 경우, 반론보도문을 원래 합의한 대로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얼마 전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결과 언론사에서 반론보도를 내주기로 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명시한 반론보도문의 내용, 크기, 지면 등은 그대로 이행하였으나, 위치는 합의서 내용과 조금 다르게 게재되었습니다. 즉, 반론보도문을 사회면 왼쪽에 게재하기로 하였는데, 언론사에서는 오른쪽에 실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론보도문의 효과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왼쪽에 게재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신청인과 언론사간에 반론보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언론사는 합의된 내용대로 반론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간접강제신청에 대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가령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 내지 삭제하거나, 합의서에서 정한 지면 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지면에 게재하는 것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귀하의 경우처럼 반론보도문의 위치를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실은 것을 가지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지면의 위쪽이 아래쪽 보다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위쪽이 아래쪽 보다 효과가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지면의 위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해서는 그 효과의 우열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해당 언론사에서는 기사의 편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반론보도문을 애초에 합의한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게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게재해 달라고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행이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는 달리 합의 사항을 어겨 정정보도문의 효과가 크게 반감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의한 합의문대로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는 임성훈이 진행하는 <세븐데이즈> 프로그램에서 원고 A가 친일파이며, 위안부 할머니에게 은장도로 자결하라고 말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내용을 방영해 원고 A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정 결과 임성훈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일반 내레이터가 낭독하여 원고 A는 조정 합의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했고 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05가단 72458)

제 3 장 가처분 절차

□ 인터넷 기사의 게재중단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문 저는 현직 국회의원 〇〇〇의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모 인터넷 신문에 저희 의원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전혀 사실무근으로서 공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신문 운영자와 기사게재중단 및 사과문 게재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만일 해당 인터넷 신문 운영자가 스스로 해당 기사의 게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기사게재 중단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요?

답 현재 우리법의 인격권 ‘방해’행위, 즉 ‘현재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의 정지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실정법 규정으로는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을 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안에서처럼 인터넷상 공개된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실정법 규정에 따라 특수한 형태의 방해제거청구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하는 언론중재법 제30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44조에 의거,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삭제를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방해제거청구권(또는 정보삭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 측에 인격권 침해행위 또는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피고에게 해당 기사의 ‘삭제’라는 일종의 작위의무를 명하는 「이행의 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선고, 확정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때까지 해당 기사를 방치한다면 당사자의 명예훼손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기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러한 가처분을 두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하고, 단순히 현상을 동결시키는 가처분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는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 취재한 내용이 방송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요건

문 얼마 전 ○○방송사에서는 저희 어머니와 윗집에 사는 신혼부부와의 불화와 다툼을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사에서는 이를 편집하여 저희 어머니가 정상이 아니고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 생각되며, 이러한 방송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와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구 정간법하에서는 판례상 인정되던 인격권 침해 금지청구가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즉,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 후문에는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귀하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보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한편, 금지청구에는 출판·배포·방영·상영 금지 재판 등이 대표적인데, 최근 금지청구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대법원 결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이와 같이 법원은 금지청구가 자칫하면 헌법상 사전 검열 금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엄격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서 인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 6 편

언론보도와 형사사건

제 1 장

명예훼손

제 2 장

모 욕

제 3 장

기 타

□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으로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문 ○○신문은 모 여고생이 수년간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즉, 해당 언론사는 폭행을 당한 심정을 자세하게 묘사한 여학생의 일기장과 함께 여학생과 그 가족이 교사, 교감 등 학교 관계자는 물론 가해자 부모를 찾아가 수차례 피해를 호소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는 여고생의 일방적인 의견 내지 입장만을 게재하여 남학생들의 폭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사실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해당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형법상 명예훼손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언론에 의한 피해이므로 우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문과 같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판례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5. 선고 2003도6036 판결)

문의하신 사항은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책과 예방을 촉구하는 공공성을 지닌 기사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남학생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법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조화·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나 폭행사건이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16. 선고 2005다62761 판결)

즉,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를 살펴보면

집단 폭행 희생자로 보도된 여학생의 일기장에 폭행을 당한 심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여학생과 그 가족이 교사, 교감 등 학교 관계자는 물론 가해자 부모를 찾아가 수차례 피해를 호소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는 점 등의 사실이 있었으므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마감시간에 쫓겨 사실 확인을 미쳐 다 하지 못한 경우 명예훼손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지방에서 영세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문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에 ○○시에 출마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신상정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모 후보의 전과기록을 그만 잘못 보도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후보는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을 받았을 뿐인데 저희 신문은 폭력행위로 인한 과실치상죄였던 것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오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마감시간에 쫓겨 나머지 선관위 등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서 △△도민일보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믿고 옮긴 데에 있습니다. 신문이 배포된 후 해당 후보는 신문의 발행인인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저희 신문사는 부랴부랴 호외 1,200부 정도를 찍어 선거일 전에 ○○시 전역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오보가 나간 경우 형사책임을 면하려면 형법 제310조에 의거,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언론사측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기자가 해당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 확인 작업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전과 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은 더욱더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감시간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오히려 선관위 등에 사실 확인을 해보지도 않는 등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만일, 해당 보도가 선관위와 같은 기

관에 문의도 해보고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해보고자 노력한 이후에 나온 결론이었다면 상당성을 인정받기가 좀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귀하는 사실 보도에서 요청되는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의 한 가지 유형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특수한 주관적 요소를 필요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입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귀하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오보가 마감시간에 쫓긴 나머지 해당 기자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발생한 ‘실수’에 불과했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형법 제307조에 의한 일반 명예훼손죄로 인한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귀하가 오보를 인정하고 선거일 전에 호외 1,200부 정도를 찍어 해당 지역에 배포함으로써 오보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고소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문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잘못된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답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문제된 행위에 적용될 죄명 또는 조항이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 형법 제33장에는 ‘명예에 관한 죄’로서 크게 명예훼손,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4가지 죄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고소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312조의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에 관한 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 명	조 문	법 정 형	고소와의 관련성
명예훼손	제307조	① 사실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 범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①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자의 명예훼손	제308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모 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즉 해당 범죄가 ‘사자의 명예훼손’이거나 ‘모욕’이라면 이들 두 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가 되므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해당 범죄가 ‘일반 명예훼손’이거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이들 두 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범죄가 되므로 고소가 없어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만 없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취소되지 않은 다른 피고소인도 처벌하지 못하는지 여부

문 저는 최근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사를 쓴 모 지방신문의 ‘기자’와 더불어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기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행인까지 고소한 것은 좀 너무 했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발행인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는 일괄적으로 취소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기자와 발행인, 두 사람에 대한 고소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고소만 취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요?

답 귀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아마도 ‘고소불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에 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원칙은 친고죄(親告罪)에 대한 고소에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33조에서는 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친고죄의 공범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만이라도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이 고소 취소의 효력은 나머지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공범 모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논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에서는 분명 ‘친고죄의 공범 중……’이라고 하여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 범죄를 ‘친고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非親告罪)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친고죄와 비친고죄에서 당사자의 고소가 갖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으로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혐의가 인정되어도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수사 개시의 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친고죄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복수의 피고소인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친고죄와 다르지

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서 고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처벌의사가 친고죄에서의 고소처럼 ‘소송조건’인 점 등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 취소 자체는 곧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 되고, 고소가 취소된 해당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효과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금지에 관한 제232조 제1, 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그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의사불벌죄에는 비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반의사불벌죄라고 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귀하는 피고소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LUS

소송조건(訴訟條件)이란 형사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 즉 형벌권의 존부를 심판하는 데에 구비되어야 할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송조건을 결여한 범죄에 대해서는 설령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공소기각’과 같은 형식재판에 의하여 해당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러한 소송조건으로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 법원의 ‘재판권’ 및 ‘관할권’ 등이 있으며, ‘소추조건(訴追條件)’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조건 또는 소추조건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범죄의 성립조건’, ‘범죄의 처벌조건’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조건**이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나아가 그 행위를 한 주체가 책임이 있으면 이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처벌조건**이란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형벌권의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무원이 되어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수뢰 후 공무원이 된 사실’이런 것이 바로 처벌조건입니다.

제 2 장 모 욕

□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점

문 형법에 있는 ‘모욕(侮辱)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나요?

답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자는 모두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편에 속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언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장(章)에 속해 있는 이 두 죄는 모두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 즉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자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두 죄는 모두 범죄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죄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그 행위의 모습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되는 반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에 이르지 않는 ‘추상적인 판단 내지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만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명예 훼손	모 욕
보호법익 (동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	
행위 태양 (상위)	구체적 사실의 적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

참고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으로도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민사적으로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인 견해의 표명 내지 표현의 자유를 넘는 의견의 표명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 3 장 기 타

□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기사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얼마 전 모 신문사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취재는 기자가 저에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묻고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별 무리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기자가 사전에 고지하거나 저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자신과 저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자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몰래녹음이나 몰래카메라에 의한 취재행위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우리 현행법상 몰래녹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즉,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몰래녹음 행위만이 위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에 기자는 대화의 일방당사자였으므로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저는 모 기자에게 시달림을 받던 중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협박, 폭행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 후 저는 기자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더 이상 기자를 처벌할 의사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고소인으로서 기자의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귀하의 고소 제목인 ‘명예훼손’, ‘협박’, ‘폭행’은 모두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2조,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피해자의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혀올 때 이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만일 진정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가해자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취소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며, 합의서의 제출만으로도 고소의 취소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다만,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래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는 같은 죄에 대해서 고소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2항) 고소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

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4 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6 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 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 2 장 언론중재위원회

제 7 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 9 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

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

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 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

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 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 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 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 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 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

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벌 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 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

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 6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 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3 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한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보상을 받는다.

제 5 조(제척·기피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6 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부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또는기피신청된중재위원또는중재절차에관여하는 직원은제척또는기피신청에대한의견서를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조정·중재절차 등의 중지)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정처리기간 및 직권조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보도물의 공개) ①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언론사는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복사

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당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용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전자우편 또는 국내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회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접수일은 중재위원회의 컴퓨터 등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③중재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제14조(중재의 개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 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중재 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부터 개시된다.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①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②중재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정기간행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제17조(시정권고소위원회)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시정권고의 신청) ①법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시정권고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시정권고 요구대상인 언론사명, 보도일자, 보도내용 및 시정권고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시정권고의 신청을 구술로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

술하고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서류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의 신청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①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심 청구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재심청구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권고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2008년 12월 11일 인쇄

2008년 12월 19일 발행

발행인 권 성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

발 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397-3114

상담전화 : (02)397-3000, 3010, 3100

FAX : (02)397-3029, 3089

http : //www.pac.or.kr

E-mail : counsel@pac.or.kr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TEL (051)759-7083 FAX (051)759-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TEL (053)763-0020 FAX (053)763-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TEL (062)676-0360 FAX (062)676-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TEL (042)525-0778 FAX (042)525-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TEL (031)211-9027 FAX (031)212-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TEL (033)255-2878 FAX (033)255-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TEL (043)286-8083 FAX (043)286-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TEL (063)288-0010 FAX (063)288-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TEL (055)263-1787 FAX (055)263-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TEL (064)722-3328 FAX (064)726-3201